

##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[요약]

장애인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(’06.4.29)에 따라, 기존 장애인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체감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장애인정책의 각 분야별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보고드립니다

### 1. 문제제기

-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
  - 장애인의 빈곤률은 전체국민의 6배에 이르며 소득수준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 →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(’05, 활동제약자 실태조사)
  - 비장애아동의 취학률은 98% 이상인 반면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64%에 불과
  - 장애인 차별도 지속되어 취업 연령인 20~49세 장애인 중 취업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42%에 이름(’05, 실태조사)
- 장애인구의 급증과 새로운 요구의 등장
  - 장애인구는 최근 급증 추세
    - ※ 장애인구 비중 : 인구대비 3.09%(1,449천명, ’00) → 4.59%(2,149천명, ’05)
  - 이에 더하여 최근 장애인들 사이에 새로운 요구가 빠르게 등장
    - 이동권 보장 요구, 활동보조인 서비스 요구,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, 교육권 보장 요구 등
-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
  -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 삶의 보장 문제 해결과 더불어 새로운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 상황
    - 기존 정책 틀 내에서의 정책 확대로는 이중의 과제 해결 곤란
      - 기존 정책의 한계 : 낮은 지출수준, 왜곡된 자원배분, 사각과 중복의 공존
  - 장애인들의 새로운 요구를 기본적 삶의 보장문제와 더불어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
    - 장애인구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

## 2. 추진경과

- 기존 장애인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 준비
  - 당초 「장애인 고용·복지 혁신대책」으로 보고 준비
    - 이를 위해 10여 차례 이상의 현장방문 및 실무자 간담회와, 수 차례에 걸친 부처실무회의 개최
- 장애인들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(’06.4.29)에 따라 빈부격차·차별시정위원회와 사회정책수석실이 공동으로 종합대책 마련
  - 각 대책별 부처실무회의 수시 개최 (’06.5.8~6.2)
  - 장애인지원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국장급 회의 (’06.6.15)
  - 장애인지원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1급 회의 (’06.6.26)

## 3. 대책의 기본 구상

- 3개 영역의 13개 세부 과제 추진



## 4. 세부대책

### 1) 장애인의 기본적 삶 보장

#### □ 장애인 소득보장의 획기적 개선

-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및 1급 장애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
  - 장애수당은 중증 7만원에서 14만원(차상위 9만원 신설)으로, 경증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
  -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중증은 7만원에서 20만원(차상위 15만원 신설)으로 인상, 경증은 10만원 신설

#### □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

- 국립재활원이 재활의료의 중앙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료기능을 확대. 권역별로 재활병원을 설치하고 지역사회재활사업 거점보건소를 확충하여 상호연계 강화
- 장애인 진료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보전. 장애인진료기관을 지정하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장애인 진료기피 최소화
- ’08년부터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경감 추진

#### □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

-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립
  - 장애영아(만3세미만) 무상교육 및 장애 유아·고등학생 의무교육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
- 특수학급 증설 및 통합학급 특수교사 배치 등 특수교육 수혜율 제고
-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대 등 장애인 교육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

#### □ 장애인 주거 지원 확대

- ’15년까지 매년 4,500호씩 총 5만호를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공급물량의 3%를 장애인 그룹홈으로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 설정
  - 매입임대 그룹홈 공급물량(’07~’10, 540호)과는 별도로 ’07년부터 ’10년까지 총 341개소(매년 85개소) 추가 공급
- 현행 농어촌 거주 재가 장애인 가구(1,000가구)에 한정된 주택개조 지원을 전국 재가장애인 가구(3,570가구)로 확대 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 대상)

## □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 혁신

- 현행 의무고용제도를 직업적 장애인 대상으로 전환(’10)
- 공단은 의무고용제도 운영과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사업 및 고용 분야의 사례관리체계(통합고용지원팀)를 담당
- 사실상 보호시설화한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시설로 재분류하고, 보호고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만 보호고용시설로 분류하는 작업 추진
- 통합고용지원팀 설치 시범사업 추진과 동시에 공단, 특수교육기관, 복지관 등을 연계하여 지역별 장애인 직업교육 네트워크 체계 구축
- 장애 유형별 고용지원 대책 추진(시각장애인 고용대책 포함)

## 2)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

### □ 장애인 이동권 증진

- 도시계획기준에 ‘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연속적인 이동동선 확보방안’을 규정하여 신도시·신규시설에 장애친화(barrier-free) 환경조성 의무화
- 기존 도시내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1개 시군구당 1개소 이상의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도록 독려
- 장애인을 배려한 교통 수단·시설이 대폭 확충되도록 저상버스를 ’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% 수준으로 확대하고 ’08년까지 도시철도 역사내 엘리베이터 등 설치 완료 추진

### 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

- 지체·뇌병변 1급장애인 중 장애가 최종증인 경우와 시각장애인 1급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(’07), 이후 사업 방향 정립

### □ 자막방송 확대

- ’06년말까지 지상파 3사 방송프로그램의 70%까지 자막방송비율을 높이고 연차적으로 확대. 장애인 선호 방송프로그램은 90% 이상까지 확대
  - 기초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청각장애인과 결혼이민자에게 아날로그 방송시청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추가 확대(45천대)
  -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비해 지상파 디지털TV 자막방송 기술표준을 ’06년말까지 마련하고 TV수상기에 자막방송 수신프로그램 내장 의무화 추진

## □ 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

- 정보통신보조기기(기술) 개발 및 연구지원으로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기술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을 확대
  - 휴대폰, 금융자동화기기(ATM) 등 정보통신기기를 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표준 제정 및 기술개발 여건 조성

## □ 재활보조기구 개발·보급 확대

-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화 및 품질관리체계를 정비. 언어치료사 및 청능사 국가공인 자격증화 등 재활보조 전문인력의 자격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공학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
- 재활보조기구 보급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절차를 공급자보상방식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현금부담 경감

## 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

- 정부·장애계 합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연구 T/F를 구성
  - ’07.3월까지 장애계·정부의 합의안 도출 추진

## □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

-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·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
-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교육을 확대하고 취업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
  - 국가·지자체의 2%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(’08), 각종 직업훈련·창업융자 등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

## 3) 장애인 정책 추진시스템 혁신

### □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

- 현행 장애 유형과 범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증·경증 개념을 재정립하고 판정기준에 의학적·사회적·직업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개편
  - 장애인 등록시 시군구 사례관리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
- 장애인 사례관리팀을 시군구에 두어 장애인의 욕구를 평가하고 지역사회내 가용자원의 파악 및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시범사업 추진(’07.7~’09)
  - 시·군·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

## 5. 소요예산

□ 대책 추진시 추가 소요예산 규모: 약 1조9천억원

(단위: 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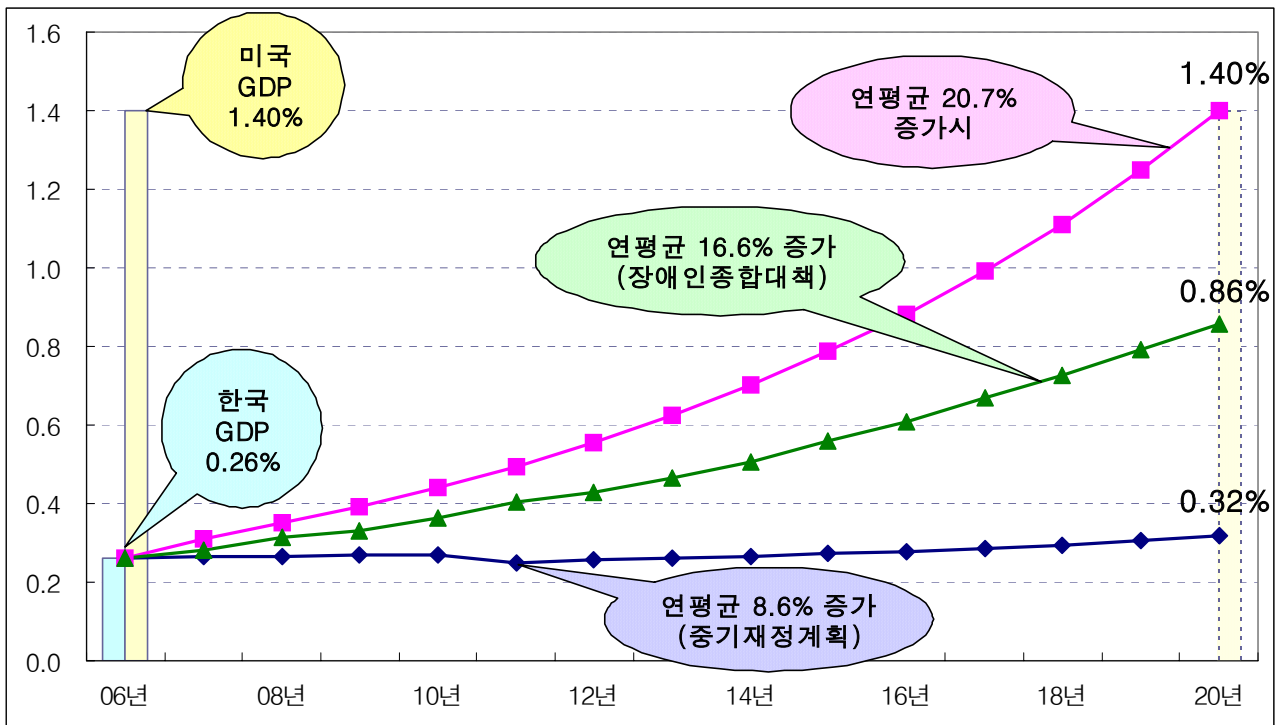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| ’07   | ’08    | ’09    | ’10    | ’07-’10 | 비 고   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장애인종합대책  | 8,548 | 10,587 | 11,612 | 12,338 | 43,085  |            |
| 중기재정계획   | 2,949 | 4,069  | 4,392  | 4,477  | 15,887  | 종합대책관련     |
| LPG 지원개선 | △326  | △1,363 | △2,289 | △4,274 | △8,252  | 연차별 절감분 반영 |
| 추가소요액    | 5,274 | 5,156  | 4,931  | 3,587  | 18,946  |            |

### □ 예산추이 비교 분석

- 이번 장애인정책 종합대책을 추진하더라도 ’20년에서야 미국(’00년)의 61.4%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

※ 총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20.7%일 경우 ’20년에 미국 수준 도달

장애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향후 예상 지출규모



※ 현재 반영된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전체 장애인정책 예산증가율은 연평균 : 8.6%

※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추진시 전체 장애인정책 예산증가율 : 연평균 16.6%

※ ’97~’06 전체 장애인정책 예산 증가율 : 연평균 14.8%

제 80 회 국정과제회의 본보고서

#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

2006년 6월 28일

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 
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 
대통령자문 빈부격차·차별시정위원회

## 대통령님 지시말씀

### ◇ ’03. 7. 16 제13회 국정과제회의

- 기존 장애인정책의 시행실적, 구체적 성과를 검토해서 장애인정책의 추세를 볼 수 있도록 보고할 것
- 장애인의무고용제와 관련하여, 장애인의무고용 회피이유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
- 예산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줄어드는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해결방안을 추진할 것

### ◇ ’04. 2. 05 제37회 국정과제회의

- 이동편의 및 기타 편의시설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
- 장애인 인력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능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
- 장애인 적합직종을 연구하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(사업)을 발굴할 것

### ◇ ’05. 5. 02 사회정책수석실 보고서

-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얼마이며,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하는지 점검할 것
- 생산성이 매우 낮아 장애인대책 자체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의 수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
-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과 방법을 세울 것

### ◇ ’06. 4. 29 「맨발의 기봉이」 관람시

- 장애인들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

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문제제기 및 추진경과 .....        | 1  |
| 1. 문제제기 .....               | 1  |
| 2. 추진경과 .....               | 2  |
| II. 장애인 및 장애인정책 현황 .....    | 3  |
| 1. 장애의 개념 .....             | 3  |
| 2. 장애인 현황 .....             | 5  |
| 1) 장애인구 .....               | 5  |
| 2) 장애인 생활 실태 .....          | 6  |
| 3. 새로운 도전요인 .....           | 8  |
| 1) 장애인구의 급증 .....           | 8  |
| 2) 새로운 요구의 확산 .....         | 9  |
| 4. 현행 정책수단의 한계 .....        | 10 |
| 1) 낙후된 정책 패러다임 .....        | 10 |
| 2) 예산의 절대부족 .....           | 12 |
| 3) 자원배분의 불공평성과 비효율성 .....   | 13 |
| III.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의 기본구상 ..... | 15 |
| 1.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의 기본구도 .....   | 15 |
| 2. 정책영역별 지원대책 .....         | 16 |
| 1)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 .....     | 16 |
| 2)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.....   | 18 |
| 3) 장애정책 추진시스템 혁신 .....      | 19 |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V. 세부대책 .....                      | 21 |
| 1. 장애인의 기본적 삶 보장 .....              | 21 |
| 1) 장애인 소득보장 .....                   | 21 |
| 2) 장애인 의료보장 .....                   | 26 |
| 3) 장애인 교육보장 .....                   | 31 |
| 4) 장애인 주거지원 .....                   | 35 |
| 5) 장애인 고용지원 .....                   | 38 |
| 2.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.....           | 50 |
| 1)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.....                | 50 |
| 2)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.....      | 54 |
| 3) 자막방송 확대 .....                    | 56 |
| 4) 장애인 정보접근성 .....                  | 58 |
| 5)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.....                 | 60 |
| 6)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.....             | 69 |
| 7)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.....                | 70 |
| 3. 장애인정책 시스템 혁신 .....               | 74 |
| 1) 장애인등록 판정·등록체계 및 서비스전달체계 혁신 ..... | 74 |
| V. 참여정부내 역할 .....                   | 77 |
| 1. 장애인의 기본적 삶 보장 .....              | 77 |
| 2.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.....          | 79 |
| 3. 장애인 정책 시스템 혁신 .....              | 80 |
| VI. 추진체계 및 부처별 세부 역할 분담 .....       | 81 |

## 표 목차

|   |    |
|---|----|
| <표 2-1> 전국 추정 장애인 수 .....                   | 5  |
| <표 2-2> 장애발생 원인별 구성비 .....                  | 5  |
| <표 2-3> 장애인의 연령별 학력 분포 .....                | 7  |
| <표 2-4>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의 규모 .....                | 12 |
| <표 2-5>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의 추이(’97~’06) .....       | 12 |
| <표 2-6> OECD 주요국의 장애인관련 지출 .....            | 13 |
| <표 4-1> 장애인(20~64세) 가구의 월평균 소득비교 .....      | 22 |
| <표 4-2>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과 월평균 추가비용 ..... | 23 |
| <표 4-3> 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취학률 비교 .....           | 32 |
| <표 4-4> 직업재활시설 및 근로장애인 현황(’05년) .....       | 39 |
| <표 4-5>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(’04년 말 현재) .....        | 39 |
| <표 4-6> 장애인고용관련 직업재활사업 실시기관 현황 .....        | 40 |
| <표 4-7>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(’05년 말) .....        | 41 |
| <표 4-8> OECD 주요국의 의무고용률과 순응률 .....          | 43 |
| <표 4-9> 고용촉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 추이 .....         | 45 |
| <표 4-10> 활동보조인 제도 수혜 대상 .....               | 55 |
| <표 4-11> 자막방송 확대시행 추진일정 .....               | 56 |
| <표 4-12> 방송사별 자막방송 편성 계획 .....              | 57 |
| <표 4-13>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계획 .....                | 57 |
| <표 4-14> 현행 재활보조기구 공적 급여제도 현황 .....         | 61 |
| <표 4-15> 보조공학 관련 별도 법률 제정의 대안별 장단점 .....    | 68 |

## 그림목차

|  |    |
|--|----|
| <그림 2-1> 장애의 개념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|
| <그림 2-2> 추정장애인 및 등록장애인의 증가추이 .....             | 8  |
| <그림 2-3> 연도별 장애인정책 지출예산 및 증감 추이 .....          | 13 |
| <그림 2-4> 장애인관련 중앙정부 지출의 기능별 분류(’06) .....      | 14 |
| <그림 2-5> LPG 세금인상분 지원예산의 추이 .....              | 14 |
| <그림 3-1> 장애개념에 따른 종합대책의 기본구도 .....             | 15 |
| <그림 3-2> 정책영역별 지원대책과 목표 .....                  | 20 |
| <그림 4-1> 차상위층 이하 저소득장애인가구 중 수급자 비중 .....       | 22 |
| <그림 4-2> 비장애인 가구대비 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(공적급여 포함) ..     | 23 |
| <그림 4-3> 신체적·정신적 손상 이후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이 메커니즘 ..... | 24 |
| <그림 4-4> 장애아동부양수당 개편 .....                     | 25 |
| <그림 4-5> 장애 수당 개편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| 25 |
| <그림 4-6> LPG 지원제도 개선방안 전후 수혜 대상 변화 .....       | 26 |
| <그림 4-7>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(서울) 소득 및 보건의료 지출 .....    | 28 |
| <그림 4-8>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수 및 장애인수 .....          | 28 |
| <그림 4-9>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수(’05) .....              | 31 |
| <그림 4-10> 정부 및 민간부문 의무고용률 달성 추이 .....          | 39 |
| <그림 4-11> OECD 주요 국가의 장애인 고용률 및 실업률 .....      | 42 |
| <그림 4-12> 취업장애인의 정부지원 여부별 분류 .....             | 43 |
| <그림 4-13> 고용촉진기금의 수지 및 부담금·장려금·적립금 추이 .....    | 44 |
| <그림 4-14> 장애인 고용관련 각종 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예산흐름 .....   | 45 |
| <그림 4-15> 장애친화구역 개념도 .....                     | 53 |
| <그림 4-16> 장애인의 홈페이지 이용시 막힘 현상 .....            | 59 |
| <그림 4-17> 현행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체계 .....               | 61 |
| <그림 4-18>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 공적 급여의 제도별 구성비 .....     | 63 |
| <그림 4-19> 한국과 미국의 재활보조기구 공적급여 규모 비교 .....      | 64 |
| <그림 4-20> 현행 보조공학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.....            | 66 |
| <그림 4-21> 건강보험 급여절차 개선안 .....                  | 67 |

# I. 문제제기 및 추진경과

## 1. 문제제기

-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
  -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국민의 6배에 이르며 소득수준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 →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
- 장애인구의 급증과 새로운 요구의 등장
  - 장애인구는 최근 급증 추세
    - ※ 장애인구 비중 : 인구대비 3.09%(1,449천명, ’00) → 4.59%(2,149천명, ’05)
  - 이에 더하여 최근 장애인들 사이에 새로운 요구가 급속히 등장
    - 이동권 보장 요구
    - 활동보조인 서비스 요구
    -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요구
    - 교육권 보장 요구
-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
  -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 삶의 보장 문제 해결과 더불어 새로운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 상황
    - 기존 정책 틀 내에서의 정책 확대로는 이중의 과제 해결 곤란
      - 기존 정책의 한계 : 낮은 지출수준, 왜곡된 자원배분, 사각과 중복의 공존
  - 장애인들의 새로운 요구를 기본적 삶의 보장문제와 더불어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
    - 장애인구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정책을 구축한다는 적극적 자세 필요

## 2. 추진경과

- 기존 장애인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 준비
  - 당초 「장애인 고용·복지 혁신대책」으로 보고 준비
    - 10여 차례 이상의 현장방문 및 실무자 간담회, 수 차례 걸친 부처실무 회의로 대책 마련 준비
- 장애인들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(’06.4.29)에 따라 빈부격차·차별시정위원회와 사회정책수석실이 공동으로 종합대책 마련
  -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 및 직업재활시설 방문 (’06.5.3~4)
  - 각 대책별 부처실무회의 (’06.5.8~6.2)
  -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국장급 회의 (’06.6.15)
  -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1급 회의 (’06.6.26)

## Ⅱ. 장애인 및 장애인정책 현황

### 1. 장애의 개념

#### □ 국제적 장애개념

-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장애개념은 WHO가 채택한 장애개념
  - WHO의 장애개념 : 신체적·정신적 기능의 손상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활동과 사회참여에 장기간 제약을 받는 상태 (ICF, ’01년 채택)
  - 장애는 개인적 상황과 환경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이 핵심
    - 개인적 상황 : 신체적·정신적 손상, 활동 및 참여의 제약
    - 환경적 맥락 : 물리적·사회적·정책적 환경 및 사회인식 등
- 장애는 개인의 기능손상이라는 정태적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회복과 활동 및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·사회적 환경의 준비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동태적 상황임을 강조
  - ※ ICF :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, Disability and Health의 약자로 장애를 신체적·정신적 구조 및 기능, 활동 및 참여,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. 이 기준은 과거의 ICIDH(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, Disability and Handicap, ’80)를 계승·발전시킨 것

#### □ OECD 국가의 장애정의

- 개인이 가진 신체적·정신적 기능손상이 사회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로 인정
  - 요건주의가 아니라 각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함

#### □ 우리나라의 장애개념

- 우리나라 장애개념은 기본적으로 신체적·정신적 기능손상에 기초
  - ※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개념 :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(장애인복지법 제2조)
- 의학적 패러다임에 의거해 장애범주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 (요건주의 -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이 채택)
- 장애범주가 매우 협소하였으나 최근 내부기관장애 및 사회적 장애의 일부 (예 : 안면장애 등)를 추가하는 등 범주 확대 추세

- ※ ’89년까지 지체, 시각, 청각, 언어, 정신지체의 다섯 가지 범주로 지정
- ’00년 1월 : 뇌병변, 신장, 심장, 정신, 발달장애 추가(제1차 장애범주 확대→10대범주)
- ’03년 7월 : 호흡기, 간질, 장루·요루, 간질, 안면장애 추가(제2차 장애범주 확대→15대범주)
- ※ 확대 예정 : 소화기 장애, 중증 피부질환, 기질성 뇌증후군, 기타 신체적·정신적 장애 중 중증장애 중심으로 선정되는 대상(『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: ’03~’07.』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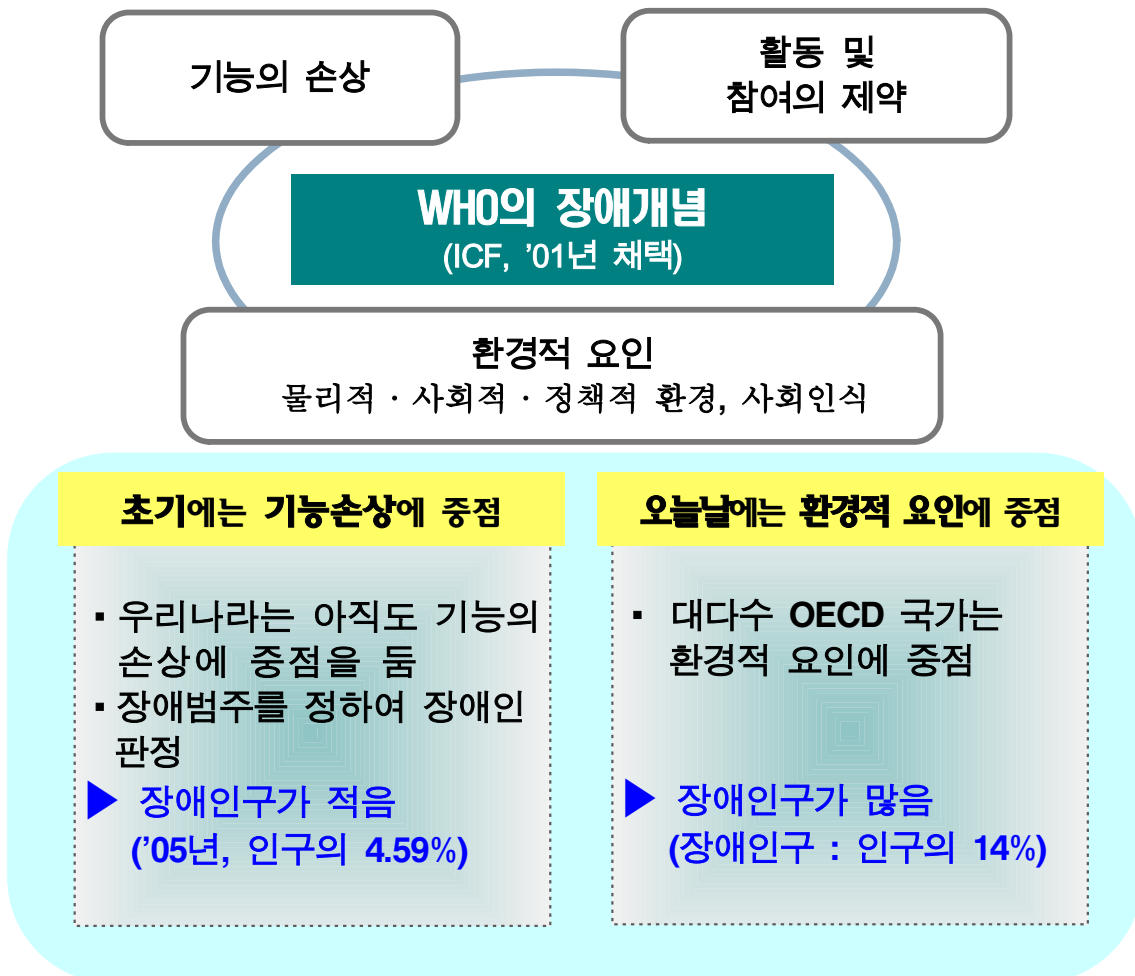
○ 그러나 이러한 범주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능손상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며 의학적 패러다임에 의한 요건주의도 지속

□ 각국의 장애정의 차이에 따라 장애인구도 차이

○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중 : 우리나라 4.59%, 일본 약 5%, OECD 평균 14%

※ WHO는 인구의 10%를 장애인으로 추정

<그림2-1> 장애의 개념





## 2. 장애인 현황

### 1) 장애인구

#### □ 추정장애인

- ’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(이하 『’05년 조사』)결과 추정장애인은 **2,149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.59%**
  - ’00년 1,449천명에 비해 699천명 증가 (48.2% 증가)
  - 장애인구 비중은 ’00년 3.09%로부터 ’05년 4.59%로 1.50%p 증가

<표 2-1> 전국 추정 장애인수

(단위 :명, %)

| 연도          | 출현률    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 | 재가장애인                   | 시설장애인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2000        | 3.09        | 1,449,496 (100.0)        | 1,398,177 (96.5)        | 51,319 (3.5)        |
| <b>2005</b> | <b>4.59</b> | <b>2,148,686 (100.0)</b> | <b>2,101,057 (97.8)</b> | <b>47,629 (2.2)</b> |

주 : 실태조사 자료에서는 중증, 경증 구분 불가능  
자료: 보사연(2005), 『’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』

#### ○ 장애인의 성별 구성

- 남성장애인은 1,283천명(59.7%), 여성장애인은 866천명(40.3%)
- ’00년 대비 남성장애인은 44.1% 증가, 여성장애인은 54.8% 증가

#### ○ 장애인의 연령별 구성

- 장애인은 아동의 비중이 적고(19세 이하 아동 102천명(4.5%)), 노령층이 많음(65세 이상 노인은 694천명(32.2%))

※ 65세 이상 노령장애인은 32.2%로 ’00년(29.9%)에 비해 2.3%p 증가

#### ○ 장애원인별로 보면 후천적 장애가 전체 장애인의 89.0%

- 이 중 질환에 의한 장애인이 52.4%, 사고에 의한 장애인이 36.6%
- 선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은 4.7% (선천적 4.0%, 출산시 0.7%)

<표 2-2> 장애발생원인별 구성비

| 발생원인   | 전체    | 선천적 또는 출생시 원인 |        |        | 후천적 원인 |      |      | 원인 불명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       |       | 소계            | 선천적 원인 | 출생시 원인 | 소계     | 질환   | 사고   |       |
| 비중 (%) | 100.0 | 4.7           | 4.0    | 0.7    | 89.0   | 52.4 | 36.6 | 6.3   |

자료: 보사연(2005), 『’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』.

## □ 등록장애인

- ’05년 12월 현재 등록장애인은 1,777천명으로 전체 국민의 3.6%
-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고, 외부장애가 83.9%, 중증이 29.8%
  - 성별 : 남성 1,131천명 (63.7%), 여성 645천명 (36.3%)
  - 유형별 : 지체장애 959천명(53.9%), 시각장애 188천명(10.6%), 청각 및 언어장애 175천명(9.8%), 뇌병변 167천명(9.4%), 정신지체 127천명(7.1%), 정신장애 63천명(3.5%) 순
  - 정도별 : 중증 530천명(29.8%), 경증 1,247천명(70.2%) (복지부 기준)

## 2) 장애인 생활 실태

- 신체적·정신적 기능손상 극복을 위한 지원 부족으로 기능손상이 활동의 제약으로 직결되며, 이로 인해 취업이나 소득활동 등 사회참여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고
- 물리적 환경이나 정부의 정책, 사회적인 인식도 기능손상과 활동 및 사회참여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

## □ 기능회복 지원 미흡

- 장애진단, 혹은 발견 후 1개월 내 즉시 치료를 받은 장애인은 78.5%이며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장애인은 21.5% (’05년 실태조사)
  - 이후까지도 치료를 받지 않은 장애인은 13.9%에 이르며
  -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사정이 33.0%로 가장 높음
-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가 충분치 않다는 장애인이 23.1%에 달하며
  -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47.4%가 경제적 사정이라고 응답
- 현재의 건강상태도 열악하여 62.8%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

## □ 활동제약의 지속

- 집안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35.4%
  - 이들 중 86.7%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
  -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90.9%는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·자매로서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

- 정신지체·발달장애는 주로 부모가 돌보며 부모의 44.1%가 소득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응답
- 내부장애인은 주로 배우자가 돌보며 배우자의 44.5%가 소득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응답
- 장애인들이 외출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가 79.5%로 가장 높으며
  - 장애인의 55.0%는 집밖 활동시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
    - 집밖 활동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35.6%가 편의시설 부족을 들었고, 27.9%가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라는 이유를 들었음
- 또한, 여성장애인의 91.1%가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

□ 사회참여도 저조

- 비장애아동의 취학률은 98% 이상에 이르는 반면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62.5%에 불과
  - 취학시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아직 미흡하여 19세 이하 장애인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%에 이룸
  - 장애인의 학력수준은 전체 국민에 비해 크게 낮은 편
    - 20~64세 전국민: 중졸 이하 25.4%, 고졸 46.1%, 전문대 이상 28.5%
    - 20~64세 장애인: 중졸 이하 51.5%, 고졸 34.5%, 전문대 이상 14.0%

<표 2-3> 장애인의 연령별 학력 분포

|         | 장 애 인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전체국민 (장애인+비장애인)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| 전체    | 20~39세 | 40~49세 | 50~64세 | 전체              | 20~39세 | 40~49세 | 50~64세 |
| 계       | 100.0 | 100.0  | 100.0  | 100.0  | 100.0           | 100.0  | 100.0  | 100.0  |
| 중 졸 이 하 | 51.5  | 18.7   | 47.2   | 70.3   | 25.4            | 7.3    | 34.6   | 60.3   |
| 고 졸     | 34.5  | 54.6   | 38.7   | 22.1   | 46.1            | 54.2   | 44.5   | 27.3   |
| 전문대 이상  | 14.0  | 26.7   | 14.1   | 7.6    | 28.5            | 38.5   | 20.9   | 12.4   |

자료 : 보사연(2005), 『’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』; 통계청, KOSIS 자료.

- 경제활동참가와 소득에서는 특이한 경향을 보임
  -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44.7%(20~64세 장애인 대상)로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 43.2%보다 높은 수준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소득대비 장애인 소득 비율은 OECD 국가 장애인 소득의 2/3 수준에 불과

-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23.5%로 OECD 평균 실업률 13.5%의 2배에 가까운 수준
- 취업한 경우에도 임시·일용직 등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음
  - 임시·일용직은 임금 근로장애인의 58%에 이룸 (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·일용직은 49%)
  - 취업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미흡하여 20~49세 장애인 중 취업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42%에 이룸
- 장애인들은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높지 않으며 가구원들의 소득도 높지 않아 장애인가구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빈곤 가구는 29.7%에 이룸 (전국민 중 절대빈곤가구는 5.1%)
- ☞ 소득보장 및 각종 서비스가 미비한 상황에서 질 낮은 생존추구형 취업과 고실업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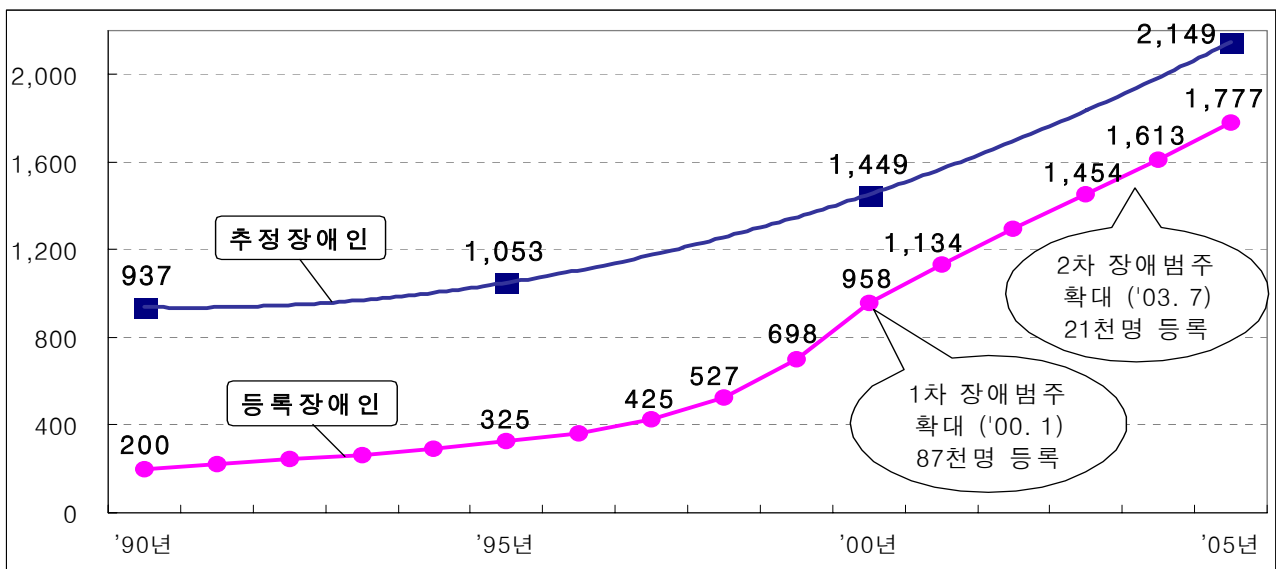
### 3. 새로운 도전요인

#### 1) 장애인구의 급증

□ 최근 장애인구는 급증 추세

- ’90~’05년 동안 추정장애인은 연평균 5.7%씩 증가, 등록장애인은 연평균 15.6%씩 증가

<그림 2-2> 추정장애인 및 등록장애인의 증가추이



- 제1차 장애범주확대 후인 ’01년 3월부터 ’05년 12월까지 등록장애인은 월평균 1.0%씩 증가 (월평균 신규등록자는 13.5천명)
  - 특히, ’04년 12월 이후 신규등록인원은 월평균 14.2천명에 달함

## □ 장애인구 급증 원인

- 장애인의 권리의식 증대
- 각종 감면·할인 혜택 등에 대한 기대감 증가
- 장애범주 확대 : 장애범주 확대의 직접 효과
  - 제1차 장애범주 확대 : 15만명 증가 (’95~’00년)
  - 제2차 장애범주 확대 : 12만명 증가 (’00~’03년)
-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 증가

- 장애범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재의 추세가 유지되면 장애인구는 ’10년에 약 3,000천명(인구대비 약 6%)에 이를 것으로 전망

## 2) 새로운 요구의 확산

### □ 최근 장애인들은 외출이나 활동에 더 적극성을 보임

- 주1회 이상 외출하는 장애인 : 39%(’95) → 79%(’00년) → 86%(’05년)
- 독서·미술·연주 등 취미활동 : 15%(’00년) → 37%(’05년)
- 컴퓨터 보유장애인 : 10%(’00년) → 50% (’05년)
  - ※ ’05년 정보격차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컴퓨터 보유율이 62%로 조사됨

### □ 권리를 확보하려는 장애인들의 운동도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

- 과거 장애단체는 장총과 장총련의 양대 조직이 중심이었으나
  - ※ 장총 :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, 장총련 :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
- 최근에는 이들과 노선을 달리 하는 제3의 세력이 등장하여 이동권 보장, 교육권 보장, 장애인차별금지 입법, 활동보조인 서비스 요구 등 새로운 주장을 제기
  - 장애인이동권연대 결성(’01.4), 장애인교육권연대 결성(’03.7)
  -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(장추련) 결성(’03.4)
  -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 등(’05)

- ☞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전통적 과제에 더하여 이동권 보장 등 새로운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

## 4. 현행 정책수단의 한계

### 1) 낙후된 정책패러다임

- 보편적 인권보장의 정책패러다임 미수용
  -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: 시설보호(’60년대)→지역사회보호(’80년대)→ 보편적 인권보장(’90년대 이후)
    -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가정 형태의 시설 활성화와 물리적·사회적 환경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
  -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설보호도 충분치 않은 상태이며 재가복지나 환경개선에는 더욱 요원한 실정
    - 기초수급장애인으로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 충족률은 50%에 불과한 상황 (『희망한국 21』)
    - 재가복지예산은 163억원(’97년) → 304억원(’06년)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(증가율 86.5%), 여전히 ’06년 생활시설예산 385억원보다 적어 아직 복지서비스는 시설보호에 치중된 상황
    - 물리적·사회적 환경개선에 관련된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보장, 문화체육 분야 등의 지출예산은 507억원으로 ’06년 장애인정책 총예산 9,432억원 (국민연금 및 산재기금 제외한 액수)의 5%에 불과
- 장애인복지에 대한 구시대적 관점의 한계
  -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복지를 ‘소비’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
  - 그러나 재활보조기구나 정보통신보조기기, 작업보조기기, 저상버스 등의 분야는 공학과 복지를 연계함으로써 산업활성화와 복지욕구 충족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
    - 특히,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구 등은 다른 활동제약자들 (노인, 임산부 등)도 사용할 수 있어 산업화는 충분히 가능함

- 우리나라는 IT강국이며 재활보조기구 등의 제작에 필요한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이러한 기술이 복지분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
  - ※ 스웨덴은 ’80년대 초반 해도 휠체어를 거의 수입하였으나 그 이후 정부에서 보조공학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오늘날에는 유럽 전역에 휠체어를 수출하고 있음

#### □ 전근대적 개념에 기초한 장애판정체계

- 신체적·정신적 손상개념에 기초한 장애등급을 사회참여의 촉진을 위한 각종 혜택의 수급자격과 직결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
  - ※ 예 : 청각장애 1급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곧 활동능력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음. 특정 장애인이 복지 및 고용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는 의학적 손상개념에 기초한 장애등급이 아니라 별도의 욕구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
  - 게다가 별도의 욕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 대신 욕구평가 자체가 필요없는 감면·할인에 의존한 결과 자원배분의 불공평성마저 야기
- 욕구평가를 하지 못하는 전달체계와 감면·할인에 대한 기대감 상승, 의료인력의 소신 부족 등이 겹쳐 현재는 의학적 손상개념에 기초한 장애등급마저 신뢰성을 크게 상실한 실정
  - 장애등록지정기관제 폐지(’00년) 이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등급판정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해져 이른바 ‘가짜 장애인’ 논란마저 일어나는 등 문제 심각화
- 현행 장애등급은 시대변화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
  -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고령화에 대비한 장애인정책의 기초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
    - ※ 65세 이상 노령장애인(694천명) 중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34.2%이며 이들 중 미등록사유로 ‘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’라고 응답한 사람이 35.8%로 가장 많지만 ‘장애인이라고 생각지 않아서’라고 응답한 사람도 33.4%에 이룸 (’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)
  - 장애개념이 지나치게 손상개념에 치중한 관계로 일시적인 사고나 질병을 당한 자나 임신·출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(임시장애인)에 대한 배려가 크게 부족

#### □ 기존 정책의 한계

-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’97년부터 종합대책을 마련, 여러 부처를 통해 추진해 왔으나
- 정책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

## 2) 예산의 절대 부족

### □ 장애인 정책 예산 현황

- ’06년 장애인정책 지출예산 총액은 22,612억원(지방이양사업 제외)으로 정부총지출 대비 1.02%이며 GDP 대비로는 0.26%
  - 지방이양사업 포함시는 24,371억원으로 GDP 대비 0.28%
  - ※ 장애인정책 예산 : 기여식 장애연금·산재급여, 비기여식 장애수당, 상병급여, 장애인고용 관련지출의 합 (OECD 2003년 보고서의 분류기준)
  -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+ 사회보험기금지출 + 기타 각종 기금 지출

<표 2-4>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의 규모

(단위: 억원)

| 연도   | GDP<br>(억원)(A) | 정부총예산<br>(억원)(B) | 장애인정책 예산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금액(억원)(C)          | C/A (%)        | C/B (%)        |
| 2003 | 7,246,750      | 1,870,794        | 14,164             | 0.19           | 0.76           |
| 2004 | 7,784,446      | 1,961,546        | 17,797             | 0.23           | 0.91           |
| 2005 | 8,158,099      | 2,086,444        | 19,367<br>(21,126) | 0.26<br>(0.26) | 0.93<br>(1.01) |
| 2006 | 8,769,957      | 2,220,024        | 22,612<br>(24,371) | 0.26<br>(0.28) | 1.02<br>(1.10) |

주 : ’05년과 ’06년의 괄호 안의 수치는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한 경우임  
 자료 :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(2006)

### ○ 장애인정책 예산의 추이

- ’06년 장애인정책 예산총액 22,612억원은 ’97년 6,555억원의 3.4배 규모
- ’97~’06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.8%에 이르러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(8~9%)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
- ※ ’98~’02년간 장애인정책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4.8%, ’03~’06년간은 16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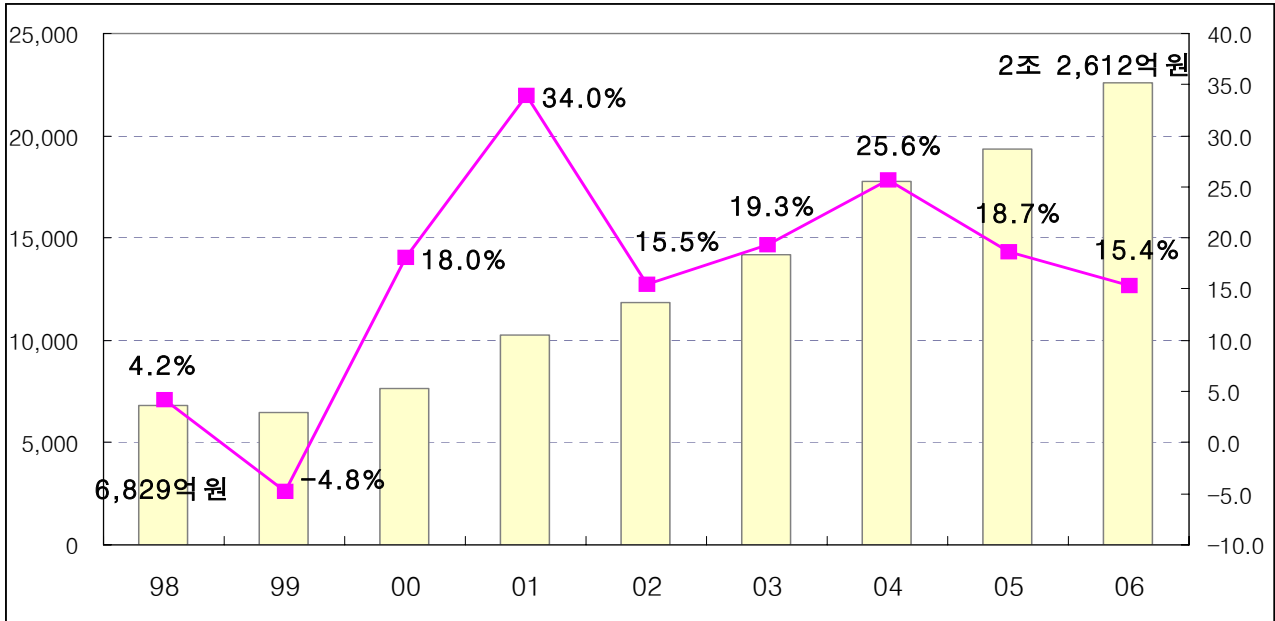
<표 2-5>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의 추이(’97~’06)

|          | 1997  | 1998  | 1999  | 2000  | 2001   | 2002   | 2003   | 2004   | 2005   | 2006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지출액 (억원) | 6,555 | 6,829 | 6,502 | 7,675 | 10,281 | 11,870 | 14,164 | 17,797 | 19,367 | 22,612 |
| 증감률      | -     | 4.2   | -4.8  | 18.0  | 34.0   | 15.5   | 19.3   | 25.6   | 8.8    | 16.8   |
| GDP 대비 % | 0.14  | 0.15  | 0.12  | 0.13  | 0.17   | 0.17   | 0.19   | 0.23   | 0.26   | 0.26   |

주 : ’98~99년에 4.8% 감소한 것은 산재기금 예산 감소가 원인. 이를 제외시 24.3% 증가함  
 자료 :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(2006)



<그림 2-3> 연도별 장애인정책 지출예산 및 증감 추이



- 이처럼 장애인예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출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
  -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지출은 GDP 대비 평균 2.73%로 우리나라 지출규모(GDP 대비 0.26%)의 10배가 넘는 수준
  - ※ OECD의 장애인구는 평균 14%로 (20~64세 인구 기준)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약 3배

<표 2-6> OECD 주요국의 장애인관련 지출<sup>1)</sup>

| 구 분     | OECD 주요국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OECD 평균 <sup>2)</sup> | 한국  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   | 스웨덴      | 독일   | 프랑스  | 이탈리아 | 영국   | 미국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GDP대비 % | 4.66     | 3.08 | 1.67 | 1.83 | 1.54 | 1.40 | 2.73                  | 0.2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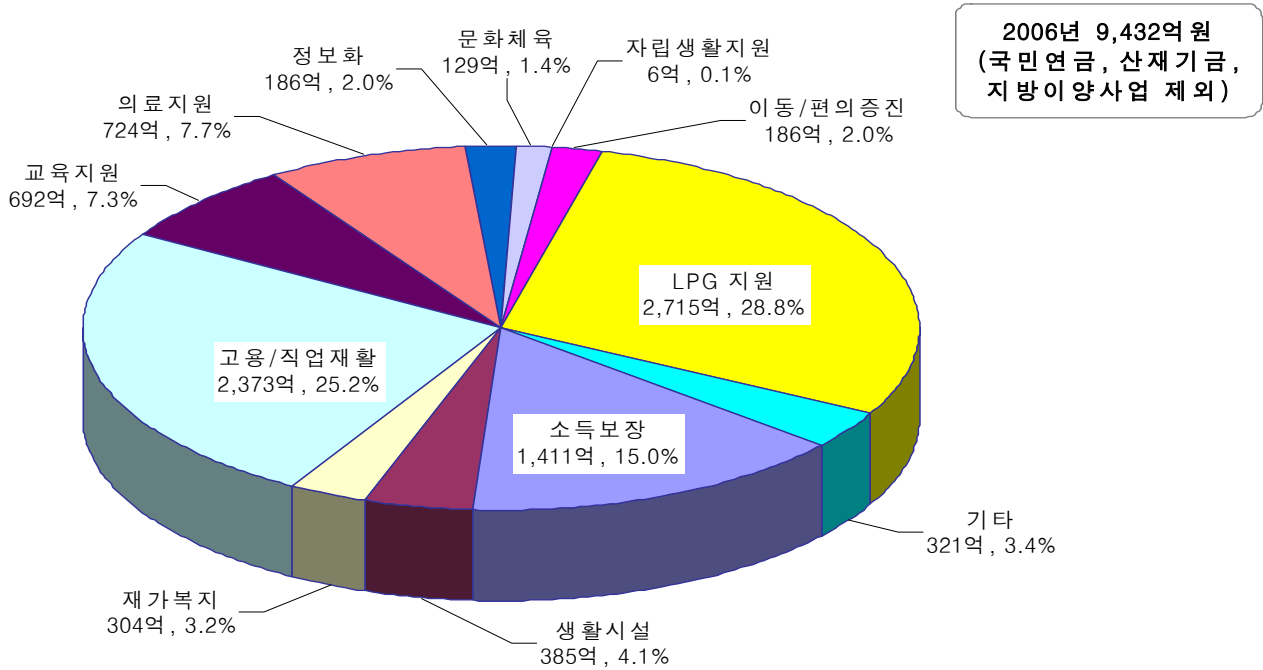
주 1. OECD 국가는 '00년 기준, 한국은 '06년 기준  
 2. OECD 평균은 한국, 멕시코, 터키를 제외한 OECD 19개국의 평균임  
 3. 우리나라의 지출에는 보건복지지출이 포함되나 OECD 지출에는 미포함  
 자료: OECD (2003),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.

### 3) 자원배분의 불공평성과 비효율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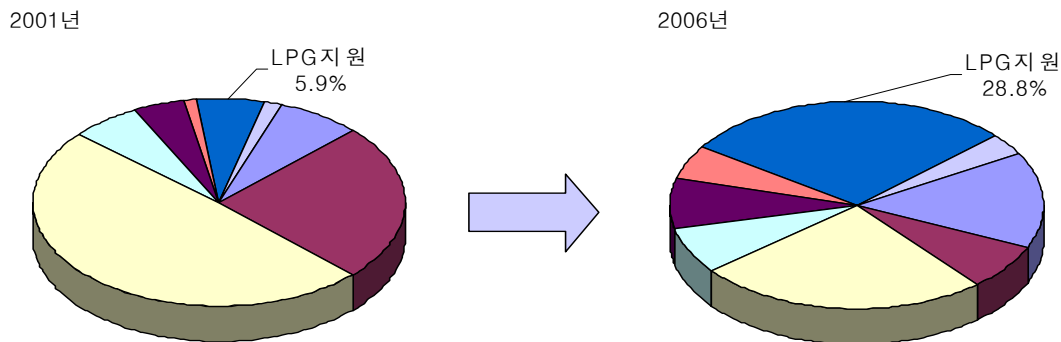
- 적은 규모의 장애인관련 지출마저 기능별로 불균등하게 배분
  - 국민연금과 산재기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'06년 9,342억원이며
  - 이 중 기타 지출이 3,036억원으로 총예산의 32%에 해당

- 기타 지출의 대부분은 LPG 세금인상분 지원(2,715억원)
    - LPG 지원예산이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예산(2,373억원)보다 많음
  -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는 각각 15%와 7%에 불과함
- ※ LPG 세금인상분 지원예산은 ’01년 도입 후 ’06년까지 연평균 58.8%씩 증가

<그림 2-4> 장애인관련 중앙정부 지출의 기능별 분류 (’06년 예산기준)



<그림 2-5> LPG 세금인상분 지원예산의 추이



□ 이동권·교육권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없이 각종 감면·할인혜택의 확대에 의존한 결과 장애인들의 삶의 구조도 왜곡

○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으로 ’00년만 해도 일반버스가 가장 많았으나 ’05년 조사결과 자가용이 1위를 차지함

※ 교통수단 이용 변화 : 일반버스 34.5%→26.9%, 자가용 24.3%→30.2%

### Ⅲ.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의 기본구상

#### 1.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의 기본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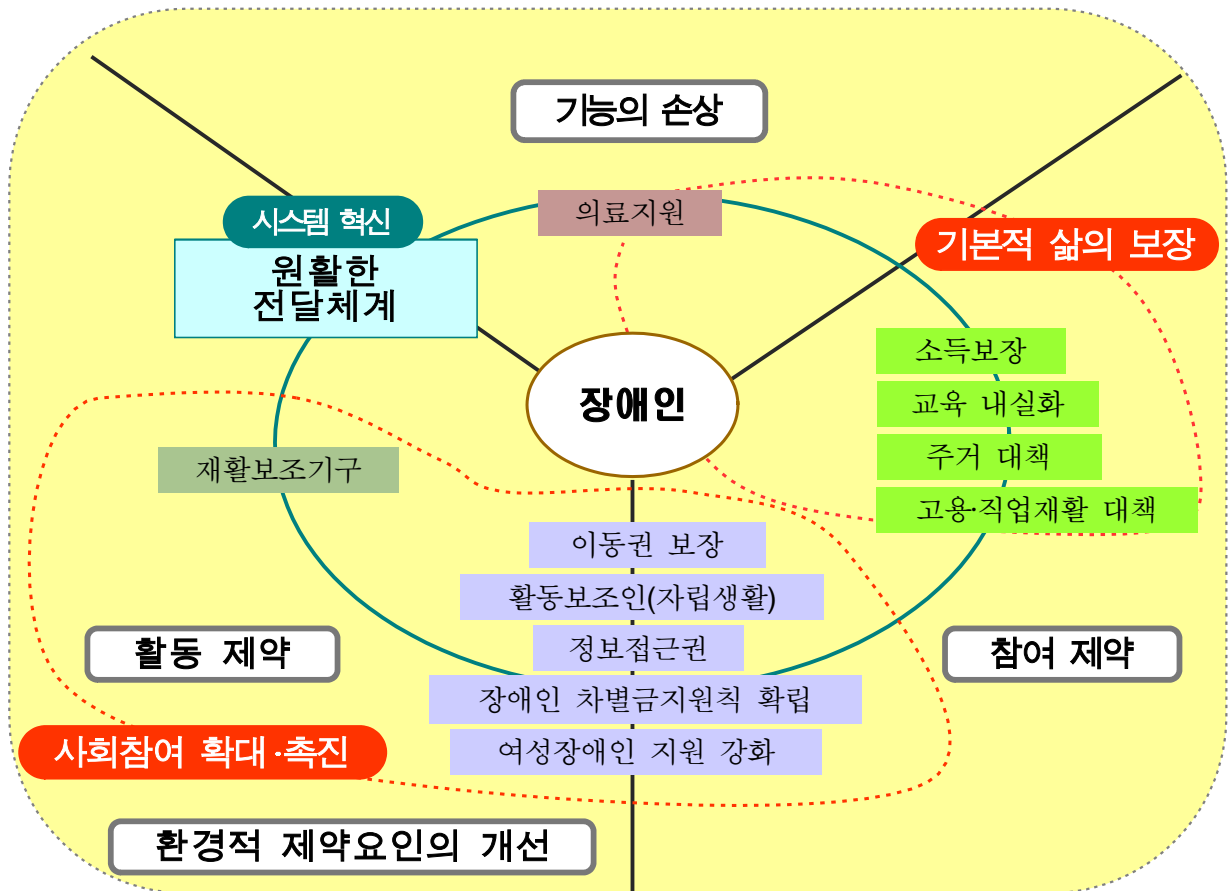
□ 기능손상 회복의 최대화

- 장애인들의 신체적·정신적 기능손상 회복을 최대화하고, 건강을 유지·증진하며 장애발생 예방에도 기여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강화

□ 활동 및 참여 제약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

- 장애인들이 만성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인 교육기회의 부족, 높은 실업률 및 열악한 고용상황, 낮은 소득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서비스를 개선·제공

<그림 3-1> 장애개념에 따른 종합대책의 기본구도



□ 주요 장애개념    ● 영역별 기본방향    ■ 영역별 세부대책

- **활동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적 조건 개선**
  -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보장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강화, 보조공학서비스 체계화 등을 추진하여 물리적·사회적 환경을 개선
  - 차별금지법 추진 및 여성장애인 지원대책을 통해 장애인 차별관행을 제거하고 사회인식을 개선
- **서비스 전달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환경의 개선**
  - 현행 장애판정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각종 서비스가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제공될 수 있는 토대 마련

## 2. 정책영역별 지원대책

- 장애개념에 따라 구분된 각 대책을 3대 영역 13개 세부과제로 재분류
  - **장애인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영역 (5개 세부과제)**
    - 기능손상 회복의 최대화와 건강유지·증진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
    - 활동 및 참여의 제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장, 교육보장, 주거보장, 고용보장 대책
  - **물리적·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영역 (7개 세부과제)**
    - 물리적·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동권 보장대책, 활동보조서비스 강화 대책, 자막방송 확대, 정보접근권 보장대책, 보조공학서비스 대책
    - 차별적인 사회인식 및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 및 여성장애인 지원대책
  - **정책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영역 (1개 세부과제)**
    -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에 세심하게 대응하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정책 추진체계 혁신대책

### 1)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

- **장애인 소득보장의 획기적 개선**
  -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및 1급 장애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

- 장애수당은 중증 7만원에서 14만원(차상위 9만원 신설)으로, 경증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
-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중증은 7만원에서 20만원(차상위 15만원 신설)으로 인상, 경증은 10만원 신설

#### □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

- 국립재활원이 재활의료의 중앙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료기능을 확대하고 권역별로 재활병원을 설치하고 지역사회재활사업 거점보건소를 확충하여 상호연계 강화
- 장애인진료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장애인진료기관을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장애인 진료기피 최소화
- ’08년부터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경감 추진

#### □ 장애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내실화

-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립
  - 장애영아(만3세미만) 무상교육 및 장애 유아·고등학생 의무교육화의 기반마련을 위한 인프라 확충
- 특수학급 증설 및 통합학급 특수교사 배치 등 특수교육 수혜율 제고
-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확대 등 내실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기반 강화

#### □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

- ’15년까지 매년 4,500호씩 총 5만호를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공급물량의 3%를 장애인 그룹홈으로 활용토록 가이드라인 설정
  - 건교부의 주택공급물량(’07~’10, 540호)과는 별도로 ’07년부터 ’10년까지 총 341개소(매년 85개소) 신규 공급
- 현행 농어촌 거주 재가 장애인 가구(1,000가구) → 전국 재가 장애인 가구(3,570가구)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확대 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 대상)

#### □ 장애인 고용·직업재활사업 혁신

- 현행 의무고용제도를 직업적 장애인 대상으로 전환(’10)
- 공단은 의무고용제도 운영과 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사업 및 고용분야의 사례관리체계(통합고용지원팀)를 담당

- 사실상 보호시설화한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시설로 재분류하고, 보호고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만 보호고용시설로 분류하는 작업 추진
- 통합고용지원팀의 시범사업 추진과 동시에 공단, 특수교육기관, 복지관 등을 연계하여 지역별 장애인 직업교육 네트워크 체계 구축
- 유형별 고용지원 대책 추진(시각장애인 고용대책 포함)

## 2)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

### □ 장애인 이동권 보장

- 각종 도시계획기준에 ‘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연속적인 이동 동선 확보방안’을 규정하여 신도시·신규시설에 대한 장애친화(barrier-free) 환경조성 의무화
- 기존 도시내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1시군구당 1개소 이상의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도록 독려
- 장애인을 배려한 교통 수단·시설이 대폭 확충되도록 저상버스를 ’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% 수준으로 확대하고 ’08년까지 도시철도 역사 내 엘리베이터 등 설치 완료 추진

### □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

- 지체·뇌병변 1급장애인 중 장애가 최종중인 경우와 시각장애인 1급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(’07) 이후 사업 방향 및 체계 정립

### □ 자막방송 확대

- ’06년 말까지 지상파 3사 방송프로그램의 70%까지 자막방송비율을 높이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되, 장애인선호 방송프로그램은 90% 이상 편성
  - 기초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청각장애인과 결혼이민자에게 아날로그 방송시청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추가 확대(45천대)
  -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비해 지상파 디지털TV 자막방송 기술표준을 ’06년말까지 마련하고 TV수상기에 자막방송 수신프로그램 내장 의무화 추진

### □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

- 정보통신보조기기(기술) 개발 및 연구지원으로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기술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을 확대

- 휴대폰, 금융자동화기기(ATM) 등 정보통신기기를 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표준 제정 및 기술개발 여건 조성

#### □ 보조공학서비스의 체계화

-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화 및 품질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언어치료사 및 청능사 국가공인 자격증화 등 재활보조 전문인력의 자격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공학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
- 재활보조기구 보급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절차를 공급자보상방식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현금부담 경감

#### 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

- 정부·장애계 합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T/F를 구성
- ’07.3월까지 장애계·정부의 합의한 도출

#### □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

-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·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
- 산전산후 도우미지원, 가사 및 자녀학습지원, 여성장애인 인권관련 전국민 홍보강화 등
-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교육을 확대하고 취업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
- 국가·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(’08), 각종 직업훈련·창업융자 등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

### 3) 장애인정책 추진시스템 혁신

#### □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혁신

- 현행 장애 종별과 범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중·경증 개념을 정립하고 판정기준에 의학적, 사회적, 직업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개편 추진
- 장애인등록시 시군구 사례관리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
- 장애인 사례관리팀을 시군구에 두어 장애인의 욕구를 사정하고 지역 사회내 가용자원에 대해 파악하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시범사업 추진

- 이후 시군구 주민서비스 혁신 추진일정에 맞추어 개념 포괄정립

<그림 3-2> 정책영역별 지원 대책과 목표





## IV. 세부대책

### 1. 장애인의 기본적 삶 보장

#### 1) 장애인 소득보장

##### ① 추진현황

-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책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
  - 장애수당(중증) : 5만원(’03년) → 6만원(’04년) → 7만원(’06년)
  - 장애아동부양수당 : 4.5만원(’03년)→5만원(’04년)→7만원(’06년)
- 국가보호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확대,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
  - 중증장애인→ 경증장애인(’05년)→시설거주 장애인(’06년)
-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지원대상자 확대 추진(관련법률 국회 계류중)

##### <국민연금내 장애연금 개정안(정부안)>

- ◇ ‘가입 중 발생한 질병’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장애연금을 ‘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후 초진을 받은 경우’까지 확대
- ◇ 미완치상병의 장애결정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  
⇒ 동법안 통과시 ‘04년 기준 가입전 발병으로 미해당된 939건중 약 44%인 416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추정

- 각종 감면·할인
  - 장애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으로 각종 세제(자동차세, 상속세 등) 및 요금 감면(고속도로 통행료, 항공 및 철도 요금 등) 실시
    -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(’88.12), 자동차세 감면(’89.1)전화요금 감면(’89, 7), LPG 사용 허용(’90.5), 철도, 지하철 요금 할인(’91.1), TV수신료 면제(’97.1)

## ② 문제점

### □ 낮은 소득수준

- 장애인(20~64세)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1,627천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3,292천원의 49.4%에 불과

<표 4-1> 장애인(20~64세) 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교

| 기준<br>년도 | 장애인가구<br>월평균소득<br>(천원) | 비 교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도시근로자가구<br>월평균소득 대비(%) | 4인 가구 최저<br>생계비 대비(%) | 3인 가구 최저<br>생계비 대비(%) |
| 2000년    | 1,079                  | 44.5                   | 116.3                 | 122.6                 |
| 2005년    | 1,627                  | 49.4                   | 143.0                 | 179.0                 |

주 1.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이 1인 이상 있는 장애인 가구를 의미함.

2. 2000년 4/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2,424,905원, 2005년 4/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3,291,671원임(통계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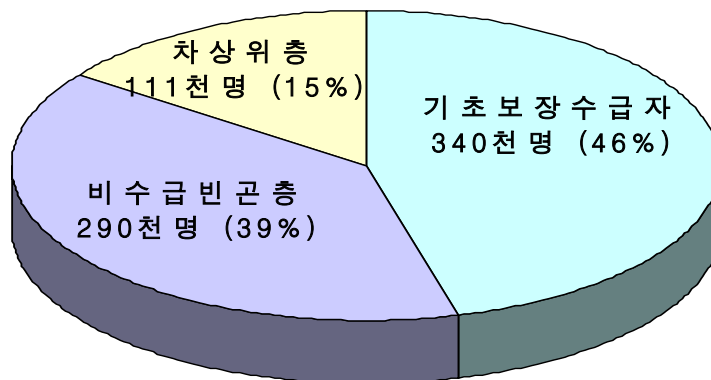
3. 2000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928,398원, 3인 기준 738,076원, 2005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,136,322원, 3인 가구 기준 907,929원임.

자료: 보사연. 『’00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』; 『’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』

### □ 협소한 대상 및 낮은 수준의 소득보장정책

- 저소득장애인이 두텁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저소득 장애인가구는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
  - 차상위층 이하 저소득장애인가구는 39.4%이며,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 장애인가구 : 29.7%
  - 저소득장애인가구의 39%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

<그림 4-1> 차상위층 이하 저소득장애인가구 중 수급자 비중(’05년)



자료: 보사연(2005), 『’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』

-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인해 이중의 생활고에 시달리지만 빈곤선이 비장애빈곤층과 동일
  - 장애로 인한 추가발생평균비용: 155천원(보사연), 86만원(서울의대)
    - 지출비목별로는 의료비가 128천원, 교통비가 41천원 순
  - ※ 장애유아 한달 평균사교육비 54만원(국립특수교육원, 2003)
  -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 390천원, 장루·요루 338천원, 신장장애 309천원, 뇌병변장애 265천원, 발달장애 174천원의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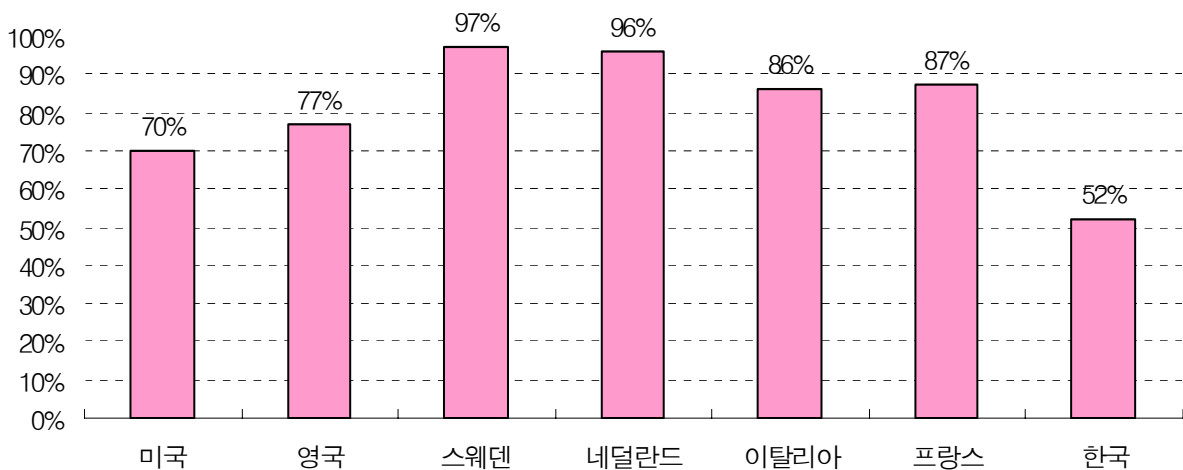
<표 4-2>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지출과 월평균 추가비용

| 구 분    | 2000년 |     | 2005년 |       | 장애로 인한 추가<br>소요비용 ('05년) |
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| 소득    | 지출  | 소득    | 지출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액(천원) | 1,079 | 999 | 1,627 | 1,382 | 155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: 보사연(2005). 『’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』

-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장애수당·장애아동부양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일부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대다수의 저소득층이 현금 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만성적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지원 미흡
  - ※ 공적이전소득: 장애인 개인이 얻게 되는 총소득의 13.6% (OECD 평균 41.1%)

<그림 4-2> 비장애인 가구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(공적급여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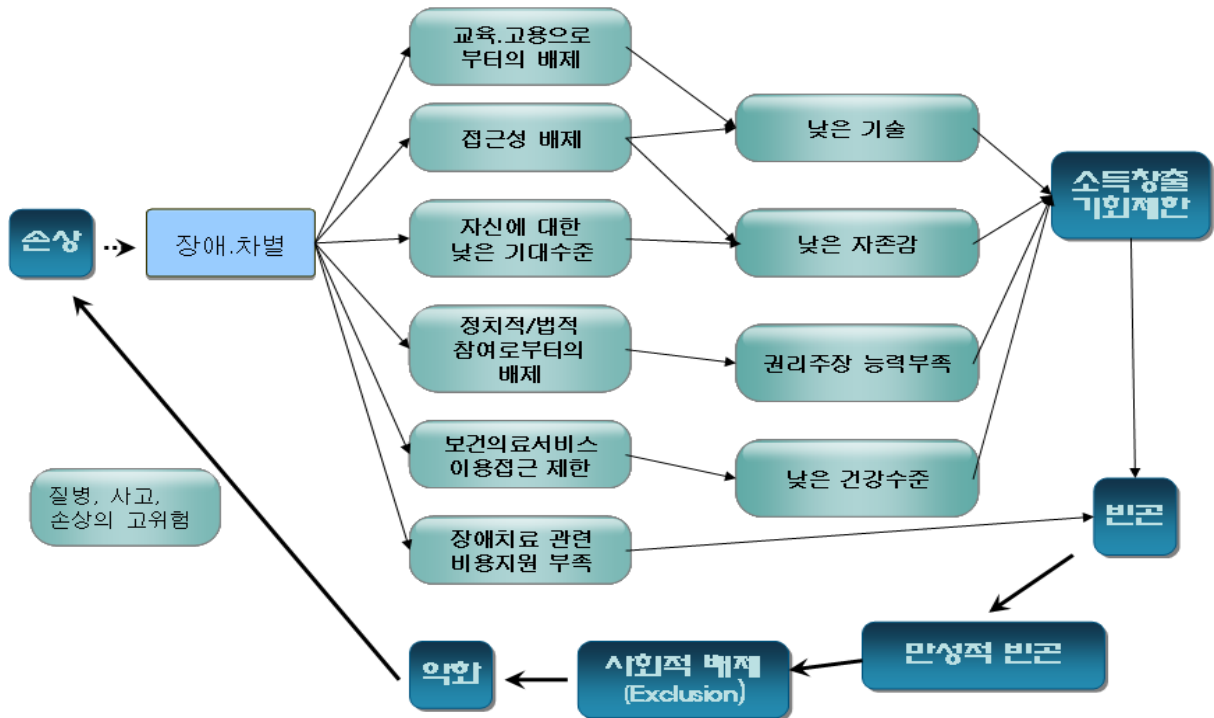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2003, 「Fact & Figures on Disability Welfare」, 한국은 「’05년 실태조사」

- 낮은 공적지원으로 장애인 가족이 모든 부담을 떠안음
  - 소득보장 미흡으로 장애인의 양육보호책임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는 결과 초래

- 빈곤은 「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혜기회 저하 →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 축적」으로 이어져 성장 이후에도 빈곤에 빠지는 악순환 초래
- 장애인 자녀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가 자신의 死後에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
  - ※ 특히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인의 자녀를 둔 경우 이 문제는 매우 심각

<그림 4-3> 신체적·정신적 손상 이후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이 메카니즘



《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》

- ◇ 1차적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 방식의 장애연금을 기초로 하되, 기여기간을 단축하거나(미국 등) 연금보험료 면제(일본)등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
  - 아울러 2차적·보충적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장애연금의 한계를 보완
    - \* 미국의 SSI, 일본의 특별장애인 수당, 장애아 복지수당, 특별아동부양수당 등
- ◇ 장애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미국 80%, 독일 70%로 OECD 국가 장애인가구 평균소득 수준이 비장애인 가구의 85%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
  - ※ 우리나라 경우 장애연금(국민연금) 소득대체율은 장애 1등급이 30%에 불과
- ◇ 최근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
  - 대상자 판정 시 노동가능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고, 직업재활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등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

### ③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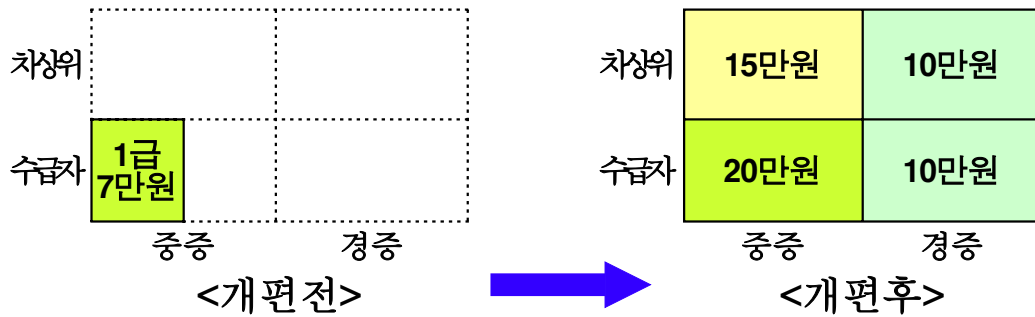
□ 장애인 소득보장의 획기적 개선

-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을 전면 폐지하되,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기초 및 차상위계층 전(全) 장애아동(중증 14천명, 경증 8천명)에게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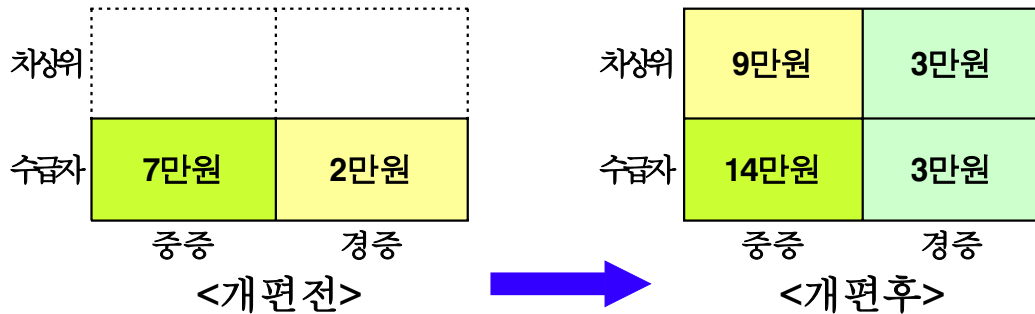
※ 기존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8세 미만 1급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급(월7만원)

- 지급 수준도 중증장애인 월 20만원(차상위 15만원 신설)으로 인상, 경증장애인 월 10만원으로 신설

<그림 4-4> 장애아동 부양수당 개편



<그림 4-5> 장애수당 개편



- 18세 이상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존 장애 수당 지급액(7만원)을 월 14만원으로 대폭 인상(차상위 9만원 신설)

- 다만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(월11만원), 국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 단계적 인상\* 추진

\* '07년 : 월 3만원, '08년 : 월 3만원, '09년 이후 : 월 4만원

- 한편 생계급여 등 타급여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대해서는 종래 장애수당(중증 7만원, 경증 2만원)을 그대로 지급

□ 불합리한 LPG 지원시책 개선과 연계하여 재원 조달

- LPG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장애인복지재정 운용의 합리성 제고
  - 내년부터 신규 진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(531천명)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되, 지원 규모는 단계적 축소

☞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기초연금제 도입 검토

<그림 4-6> LPG 지원제도 개선방안 전후 수혜 대상 변화

|     | < 현 행 >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< 개 선 >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차상위 | 493천명<br>LPG 만<br>지원받는<br>사 람 |                         | LPG 중단<br>457천명 |                 |
| 수급자 | 38천명<br>LPG+장애수당              | 330천명<br>장애수당만<br>받는 사람 | 36천명<br>장<br>수  | 124천명<br>애<br>당 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38천명            | 330천명           |

## 2) 장애인 의료보장

### ① 추진현황

-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과 함께 2종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보전
-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 74개에 이르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건강급여 지급 및 내구연한 연장 ('04. 4)
  - 기존 74개 항목중 58개 항목에 대한 기준액을 평균 36.6% 인상
    - ※ 보험급여 비용 : '04년 86억원 → '05년 217억원
  - 건강보험 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확대('04년 99개→'05년 108개), 고도난청장애인에 대한 인공와우 보험급여 적용('05. 1)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
- 저소득가정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자의 특수 조제분유 및 의료비 등 지원('05년 854명)

- 심신장애 발생률이 높은 저체중 출생아 등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보건소 등록체계 확립

《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국제동향 》

- ◇ UN에서는 ‘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약’(1993년)을 채택하고, 회원국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회적 지원과 함께 의료와 재활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
  - WHO에서 동 규약을 바탕으로 한 평가 결과 절반에 가까운 국가에서 장애인들이 일반의료 체계 밖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◇ 미국에서는 국립보건원(CDC) 내 장애인 의료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구(National Center on Birth Defect and Development Disability)를 설립
  - 장애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, 이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보편적 기준(universal design)을 제시

○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

-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설치하고(’06년)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해 장애인 관련 교육 실시 (14회, 연 840명)
- 6개 권역별(경기, 강원, 제주, 충청, 호남, 영남) 재활병원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(’04~’09년)
  - ※ 총사업비: 1,977억원(’05년까지 기투자액 50억원), ’06년 현재 경기(인천), 강원 추진 중
-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(CBR) 거점보건소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 활성화(’06년 현재 45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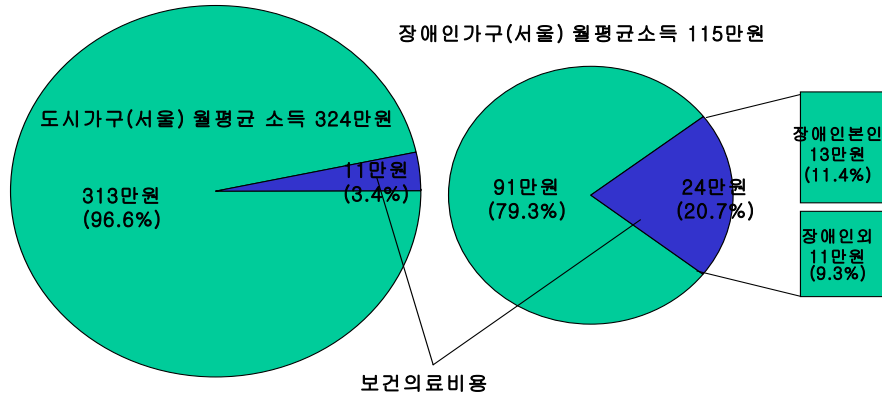
○ 일부 장애인에 대해서는 치과진료 수가 가산제 도입 등을 통해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

② 문제점

□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·이용 애로

- 의료비 지원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차상위계층 이하 빈곤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가중
  - ※ 장애인중 의료급여 대상자 : 18%(비장애인 2.5%의 7.4배)
  - ※ 장애인 1인당 연간 총진료비 : 118만원(비장애인 30만원의 4배)

<그림 4-7>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(서울) 소득 및 보건의료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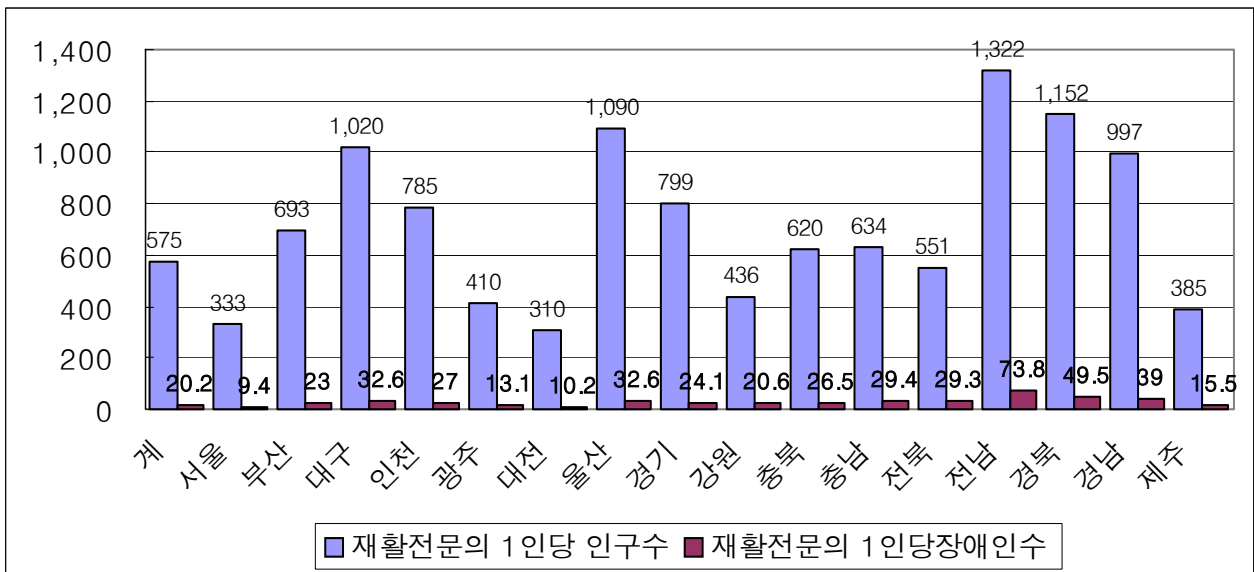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서울대·건강보험관리공단(2005), 「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분석 및 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」

- 장애인의 경우 운동 부족 등으로 질병 유병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, 정보 부족이나 건강에 대한 잘못된 믿음 등으로 병원 이용에 소극적
  - ※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: 41% (비장애인: 48%)
  -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거나(31%),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(16%)가 거의 절반을 차지
-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2층에 있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
  - 특히 언어 및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미비로 진료 어려움 가중

<그림 4-8>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수 및 장애인수

(단위 : 백명)



자료 : 서울대·건강보험관리공단(2005) 「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분석 및 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」



-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부족
  -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정보 및 인식 부족, 의료사고 위험 등으로 장애인 진료에 소극적 (주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)
  - 장애관련 의료 인력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지방 거주장애인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
    - ※ 서울의 경우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는 33,300명이며,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장애인 수도 940명임. 반면, 전남은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 132,200명으로 가장 열악함
-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부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나 진료수가는 동일하여 일반 병원의 장애인 진료 유인이 없음
  - 특히, 중증 재활치료시설 뿐 아니라, 높은 병상가동율이 유지되는 국립재활원의 경우에도 만성적 적자가 발생하는 등 낮은 진료수가로 인한 민간병원의 투자 기피현상 심화
-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및 구강위생관리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취약하나 제때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구강상태 더욱 악화. 높은 치료 난이도 및 마취 등 부대장비·인력 소요로 장애인 진료 기피

### ③ 추진계획

#### □ 장애인진료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시설확충

- 중앙재활병원으로서의 국립재활원 기능 개편
  - 재활병상 확충(200병상 → 300병상)을 통해 만성적인 진료대기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고, 재활의학과 이외에 안과, 이비인후과, 산부인과, 구강외과 등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
  - 한방진료부를 신설(50병상)하여 한·양방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
  - 국립재활연구소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유형별로 전문화된 재활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는 등 재활관련연구의 중심축으로 육성
    - ※ 국립재활원의 연구성과는 의료인 및 장애인 대상 의료재활관련 교육에 활용
- 국립재활원, 권역별 재활병원 및 거점보건소간 연계체계 확립
  - 6개 권역별로 설치되는 재활병원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전국단위의 재활의료서비스체계 정립을 위해 「재활의료서비스지원센터」를 국립재활원에 설치

- 권역별 재활병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보건소 확충(45개소→200개소)을 통해 지방거주 장애인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
-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 인력 확충, 방문보건요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방문보건 사업 내실화
- 시·군·구 구강보건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(’06년 5개소, ’10년까지 95개소)하고 시도 구강보건센터를 ’10년까지 26개소 신설

#### □ 병의원 장애인 진료기피 최소화

- 병의원으로의 이동비용이 크므로 이에 대한 비용보전 방안 강구
  - 거동이 불편해 병원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여 병원 이용의 접근성 제고
- 수화통역사 배치 확대, 야간대기조 편성 등을 통해 병원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
  - ※ 현재 수화통역센터는 130개소, 수화통역사 수는 693명,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17만명
  - 수화통역사를 ’15년까지 청각장애인 100명당 1인까지 확충하기 위해서는 약 1,000여명 추가 확보 필요
- 장애인 진료희망기관 신청을 받아 『장애인 진료 의료기관 지정』 추진
  -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·장비 설치 및 수화통역사 배치 비용 등 지원
- 장애로 인해 진료상 부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발생하는 영역을 발굴하여 가산수가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 개발
-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는 재활병원의 수지 개선을 위해 재활수가를 현재 수준에서 대폭 상향 조정
  - 금년 하반기에 국립재활원 등 국립병원의 운영실태 분석 후 수가 상향 조정
  - ※ 현재 수가에서 10%~20%를 상향 조정 (소요재정 : 약 55억원~110억원)
  - 현재 진행중인 상대가치점수 재평가연구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전문재활 치료의 원가보전율은 약 80% 수준 (전체항목의 원가보전율 : 약 81%)
-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 공인인증서를 부여하고 시설장비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
- 팀 접근이 필요한 경우 진료시 별도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활병원 인증기준이나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장애인 진료를 위한 의료팀 구성을 유도
  - 장애발생, 치료,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### □ 장애인 진료부담 완화

- '08년부터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추진
- 만성 신부전증(신장장애), 근육병, 파킨슨병 (지체장애)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
  - 대도시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특성을 감안, 쉼터를 건립하여 숙박 및 정보·상담서비스 제공 등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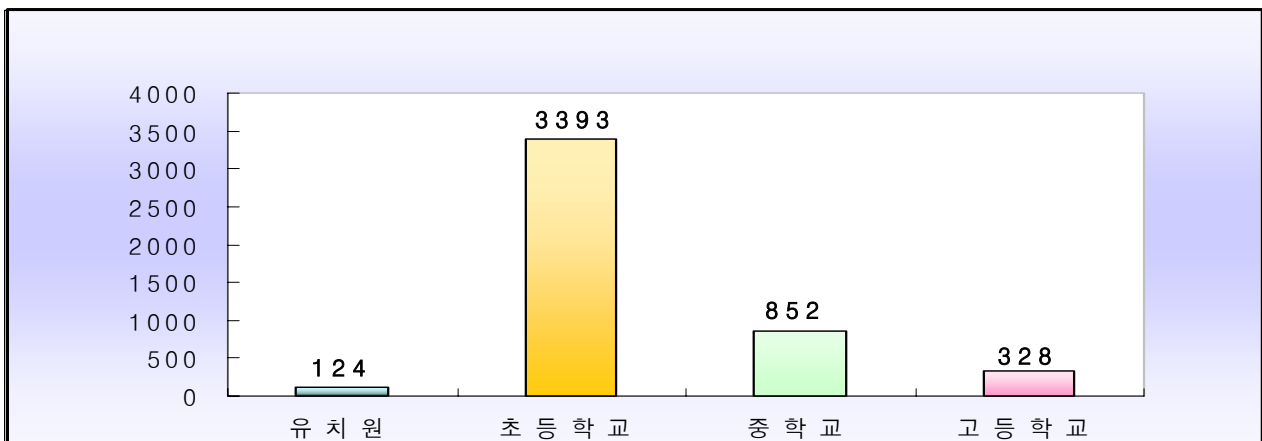
## 3) 장애인 교육보장

### ① 추진현황

#### □ 장애인 교육

- 장애인교육 대상학생의 초·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,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으로 운영
- 장애인교육 대상 유아의 일반유치원 배치 확대 및 학비지원을 통한 무상교육기회 제공
  - ※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~5세 장애유아 2,000명 지원(국·공립유치원 월 9만원, 사립유치원 월 311천원)
- 장애인교육 현황
  - 장애인교육기관은 특수학교 142개교, 특수학교의 특수학급 4,697개,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3,663개 운영

<그림 4-9>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수('05)



※ 초등 특수학급 졸업생 3,522명 중 54%인 1,903명, 중학교 졸업생 1,477명의 45%인 661명이 특수학급 부족으로 일반학급 혹은 특수학교로 진학

- 특수교육기관 재학생은 ’05년 12월말 현재 58,362명
- 특수교사는 10,429명(교사 1인당 장애학생 5.6명)(’05년 말)

□ **교육여건 개선**

- 특수교육보조원(2,413명) 배치 및 자원봉사자 등 교육보조인력(공익근무요원 874명) 지원
- 장애학생의 진단·평가지원, 교수·학습지원, 부모상담 등을 위해 182개 지역교육청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(60개소 지원)
- 142개 특수학교의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배치(250명)
- 장애학생 교수·학습지원을 위한 웹기반 지원자료 개발(51종, 119교과)
  - ※ 시각장애학생 멀티미디어 자습서 및 발달장애학생 기본교과(51종), 청각 및 시각장애학생 수능 방송자료(119교과)

② **문제점**

□ **낮은 장애인교육 수혜율 및 서비스 수준**

-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아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,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과정별 학급설치 불균형
  -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기초인프라인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고, 초·중·고 과정별 특수학급 설치율이 불균형하여 통합교육의 연계성 보장 미흡
  - ※ 전국 10,743학교 중 3,622학교에만 설치(초 47.2%, 중 24.4%, 고 10.0%, 전체 33.7%)

<표 4-3> 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취학률 비교

|     | 비장애아동 | 장애아동  |
|-----|-------|-------|
| 초 등 | 98.8% | 73.7% |
| 중 등 | 94.3% | 57.7% |
| 고 등 | 92.2% | 60.9% |
| 계   | 95.1% | 64.1% |

자료 : 교육부 내부자료

- 학교교육이 개별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학부모의 가계부담 가중
  - ※ 유치원아의 34%, 초등부 아동의 15% 가량이 사실 특수교육실을 이용하고 있으며, 이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4만원 (국립특수교육원, 2005)
- 통합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지원수준에 이르지 못해 많은 학급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

-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미흡 및 통합교육 지원교사 미배치로 형식적인 통합 수준
  - ※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: 72.3% (’05)
  - ※ 특수학급 전담 순회 치료교육교사 배치 : 130명 (’06)
-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교사의 지도능력 부족으로 교육 수월성 담보 곤란
  - ※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(’05) : 12%
- 현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「특수교육지원센터」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역부족
  - ※ 전국 18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60개소에만 전담인력 배치(’06)
- 장애인교육보조원 배치,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급증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특수교육 재정이 부족
  - ※ ’06. 3. 조사결과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, 7,000명이 필요하나 현재 유급 보조원 2,413명, 공익근무요원 874명만이 배치되어 있음
- 시·도 및 지역교육청의 장애인교육 지원행정 조직의 미약으로 폭증하는 장애인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힘든 현실
  - ※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 장애인교육 전문직 배치율(’06) : 40.1%
- 장애학생을 위한 웹기반 교수·학습자료, 보조공학기기 개발·보급 등은 장애인 교육 현장의 주요 지원요구사항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지원에 한계

### ③ 추진계획

-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립 (“특수교육진흥법” 개정)
  - 특수교육의 하위범주로 장애인 교육 개념정립
  -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관, 가정 혹은 시설 등에 순회교육 실시
  - 유·초·중·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’10년에 유치, 고등학교 과정에 의무교육 도입 검토
  -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제공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근거 마련
  - 장애인 고등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·사범 대학으로 확대하고 학교평가에 반영
  - 장애 성인의 평생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

- 장애가능성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장애인교육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**장애개념을 세분화**
  - ‘장애인복지법’상 장애인에게 필요한 장애인교육 서비스 제공

#### □ 장애학생 교육시스템 혁신

-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**교육 기본 인프라 구축**
  -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,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 교사를 통해 교육기회 제공
- 학교과정별 **균형적인 교육기회 제공** 및 특수학급 미설치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**특수학급 증설**
  - ※ 기초자치단체별로 유치원 및 중·고등학교 특수학급 미설치 269개 지역에 중점 설치 : 1,252개 특수학급 증설(’07~’10)
  - 시각, 청각 전담 특수학급을 개설하여 감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강화
- 장애학생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설치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
  -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’09년까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,050개 특수학급 설치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완전 설치
  -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
    - ※ 통합교육지원 특수교사 1,278명 배치, 특수교사 별도정원 확보(’06~’10)
  - 통합학급 담당교사 인센티브 부여
    - ※ 통합학급 담당 일반교사 20,825명, 통합교육 지원수당 1인당 5만원 지원 및 매년 100명씩 우수교원 선발 통합교육 선진지 시찰
- 일반교사의 장애인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대·사대 교원양성대학에 “장애인교육 관련” 강좌 개설 의무화
- 교육수혜자의 교육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**특수교사 양성 표준 교육과정 마련(’07)**

#### □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

-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서비스 강화
  - 장애학생 부모상담, 진단·평가 및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
    - ※ 연도별 소요인원 : ’07(514명), ’08(676명), ’09(820명), ’10(1,240명)

- 장애학생 학교생활 적응 및 이동 지원을 위한 **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대 및 질 제고**
  -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: ’06(2,413명) → ’07(5,000명)
  - 공익근무요원의 장애인교육 보조인력 활용 : 연 1,000명
  -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자격기준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(’07)
- 장애학생 부모의 **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**를 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**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**
  - 특수학교에 학교과정별 1학급씩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
    - ※ 특수학교 : 142개교, 568학급(유치원 1학급, 초등 1, 중 1, 고등1)
  - 유치원 특수학급은 종일반, 초·중등학교 특수학급은 방과후 학교 운영
    - ※ 유치원 : 102학급(전체), 초·중등학교 : 1,811학급(2개교당 1학급)
- 시·도 교육청 ‘**특수교육 담당관제**’ 신설 및 지역교육청의 **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대 배치**
  - ※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배치 교육청 : 4개 교육청(서울, 부산, 경기, 경남)
- 특수교육 현장지원 확대를 위한 **국립특수교육원 기능 강화**
  - 특수교육과정 연구·개발 및 장애인 정보매체 개발을 위한 ‘교수·학습 자료 개발과’, ‘특수교육과정 개발과’ 및 ‘정보운영과’ 등 3개과 신설

## 4) 장애인 주거지원

### ① 추진현황

- 공공부문 공급주택의 장애인 특별지원제도 실시
  - 국민임대주택 : 공급호수의 15% 범위 안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
  - 영구임대주택 : 지자체가 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장애인을 입주자로 선정
  - 공공분양·공공임대 : 공급호수의 10% 범위 안에서 장애인 등에게 특별 공급
  -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: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장애인 등을 입주자로 선정 (1순위 : 수급자 및 차상위층, 2순위 : 모·부자가정 및 장애인)

- 그룹홈 지원 : 매입 및 전세임대의 일정물량을 공동생활가정으로 활용
- 장애인 거주편의를 위한 시설 개조
  - 아파트 단지내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(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)
    - ※ 의무 설치 시설 :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접근로·건물 출입구·경사로·승강기, 높이 차이가 제거된 출입구 및 전용주차구역 등. 다만, 주택내 편의시설은 권장사항임
    - ’00년부터 주공이 입주 예정자로부터 장애인·노약자용 화장실·욕실 등의 설치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설을 설치해 왔음
    - ’04.6월, 완공된 국민임대주택 현지 점검, 기준(안) 마련
    - ’04.8.19, 「주거환경자문위원회」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(안)을 의결하여 국민임대주택에 적용하기로 함
    - ※ 대상은 최초 분양자가 65세이상 노인 3급 이상 중증 자폐장애인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 있는 신청자로 하고, 주택내부 욕실·주방 등의 편의시설 11종을 무료로 설치하며, 주방용 좌식싱크대는 원가제공
- ’06년부터 농어촌 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개조사업 실시중(복지부)
  - 가구당 4백만원씩 1천가구를 지원, 사업비는 국비(농특회계)와 지방비로 각각 50%씩 충당
  - ※ ’04~’05년에는 복권사업으로 지역구분없이 장애인 가구당 320만원씩 4,461가구를 지원, 사업비는 복권기금과 지방비로 50%씩 충당

## ② 문제점

- 장애인 그룹홈(공동생활가정) 설치 부족
  -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장애인이 입주 가능하나, ’04년에 새로 도입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에 설치되는 그룹홈 설치 활성화 대책 미흡
  -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1동당 1개소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, 주거복지전달체계 미비로 인해 관련단체의 신청 및 참여 저조
  - 지자체 주택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나,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업무연계가 미흡
  - ※ ’04년 시범사업 공급물량 500호 중 10%범위내에서 장애인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설치된 그룹홈은 26호에 불과하고, ’05년 공급물량 4,500호를 포함해도 그룹홈은 지금까지 약 50호에 불과



- 그룹홈 운영기관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미비
  - 업무처리 지침상의 ‘공동생활가정(그룹홈)’은 복지시설이 아닌 ‘새로운 주거형태’이므로 운영예산지원 근거 미비
    - ※ 현행 복지관련 법령상 시설에 대해서만 복지에산의 지원이 가능하나, 그룹홈은 시설로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원 불가

#### □ 주택개조사업의 대상 제한

-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로 국한되어 도시지역 재가장애인은 수혜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
  - ※ 재가장애인의 18.3%가 주택개조 희망(’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, 보건사회연구원)
-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매뉴얼도 없고, 국민임대는 건설중에 장애인 입주예정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내부시설을 개조하나, 기존의 영구임대, 공공임대는 내부시설 개조가 시행되지 않음
  - ※ 노인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’05.12월 노인주택 개조지침을 마련한 이후 현재 주택개조 매뉴얼 마련 추진중

### ③ 추진계획

#### □ 그룹홈의 지속적인 확대(’10년까지 881호가 추가적으로 필요)

- ’15년까지 매년 4,500호씩 총 5만호를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공급물량의 3%를 장애인 그룹홈으로 활용토록 가이드라인 설정
  - ※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공급계획은 ’05.4.27 국정과제회의시 기 확정
- 건교부의 주택공급물량(’07~’10, 540호)과는 별도로 ’07년부터 ’10년까지 총 341개소(매년 85개소) 신규 공급
- 장애인 재활시설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생활이 가능한 자는 그룹 홈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주거지원서비스 개편 추진

#### □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 확대

- 현행 농어촌 거주 재가 장애인 가구 (1,000가구) → 전국 재가장애인 가구 (3,570가구)로 확대 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 대상)
  - 위의 3,570가구와 별도로 장애인가구 주택개조사업에 자활근로사업 집수리 사업단을 적극 활용
- 주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입주자 희망시 거주편의 증진을 위해 내부개조 지원

※ 장애인의 우선입주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타 특별지원대상중에도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로서는 장애인 입주자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으나, 현재 주공이 입주자 DB를 구축중이므로 이 작업이 완료(’06년 말 예정)되면 구체적인 지원대상규모의 파악과 소요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○ 민간공급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

○ 장애인 주택개조 지침 및 매뉴얼 제정 추진

※ 건교부에서 노인주택개조지침(’05.12)을 마련하였으며, 현재 이의 구체화작업 추진중

□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

○ 현재 건교부가 고령자주거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, 고령자·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포괄하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추진 검토

□ ‘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’ 관련

○ 주거복지 담당조직(계) 신설을 독려하고,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룹홈 운영·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 유도

## 5) 장애인 고용지원

### ① 추진현황

□ 장애인 고용을 위한 현행 제도

○ 장애인의 고용은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으로 크게 구분

○ 이러한 고용을 위해 직업재활서비스 및 의무고용제도 등 운영

※ 이 외에 일반고용을 목표로 하는 고용서비스로 지원고용이 있음. 이는 일반사업체에 장애인을 취업시키되 취업현장에서 장애인을 도와주는 인력(job coach)을 배치하여 취업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관 등에서 일부 실시

□ 보호고용 : 특정한 환경 하에서 장애인을 근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

○ 현재 보호고용은 복지부 소관 직업재활시설에서 담당

○ ’05년 현재 260개 직업재활시설에 7,684명의 장애인이 근로

※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72.4%는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

<표 4-4> 직업재활시설 및 근로장애인 현황 (’05년)

| 시설        | 개소 | 계                | 근로 및 보호작업시설 |        |        | 작업활동 시설 | 직업훈련 시설 |
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| 소계          | 근로작업시설 | 보호작업시설 |         |         |
| 시설        | 개소 | 244 <sup>1</sup> | 168         | 24     | 144    | 65      | 11      |
|           | %  | 100.0            | 64.6        | 9.2    | 55.4   | 25.0    | 4.2     |
| 장애인       | 명  | 7,684            | 5,466       | 1,252  | 4,214  | 1,889   | 329     |
|           | %  | 100.0            | 71.1        | 16.3   | 54.8   | 24.6    | 4.3     |
| 개소당 인원(명) |    | 29.6             | 32.5        | 52.2   | 29.3   | 29.1    | 29.9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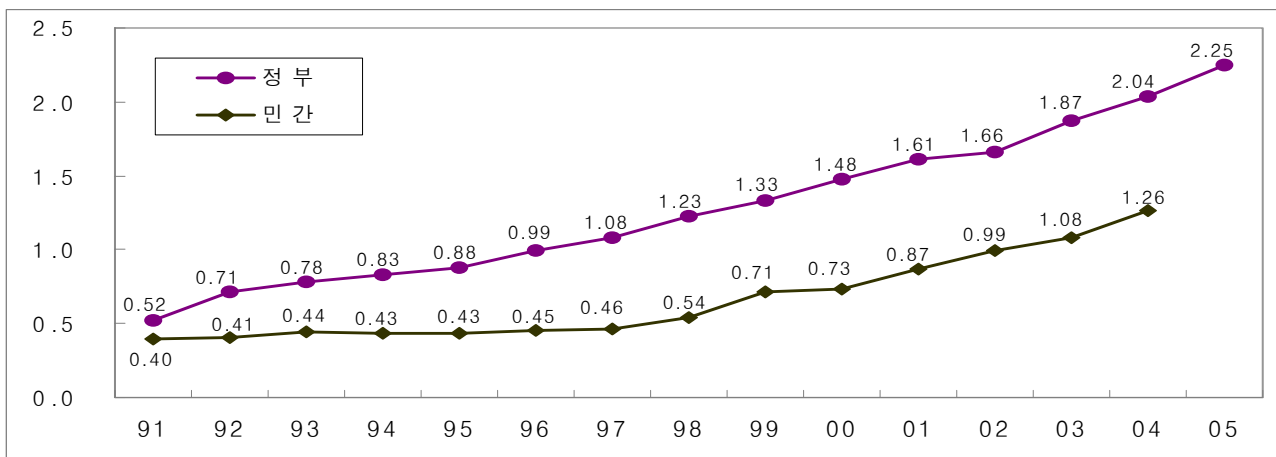
주 : 계의 244개소는 직업재활시설 총 260개소중 생산품판매시설 16개소를 제외한 것임

- 일반고용 : 일반사업체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의무고용제도 운영
  - 의무고용제도의 운영은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(이하 이 절에서 “공단”)이 담당
  - 의무고용 장애인은 ’04년 12월말 현재 52,753명, 고용률은 1.37%
    - 정부기관은 2.04%로 의무고용률 초과, 기업체는 1.31%로 저조
    - ※ 정부기관은 ’05년 말 현재 2.25% 달성으로 성과 지속 향상. 그러나 적용제외율 폐지 고려시 고용률은 2% 이하로 하락할 전망
  -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규모 및 기업성격별로 차이
    - 300인 미만 사업장 1.41%, 300인 이상 사업장 1.26%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하며 30대 기업집단은 0.97%에 불과

<표 4-5>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(’04년 말 현재)

| 구 분     | 대상사업체 (개소) | 적용대상 근로자(명) | 고용의무 인원(명) | 장애인 근로자(명) | 고용률 (%)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합 계     | 17,037     | 3,847,875   | 69,108     | 52,753     | 1.37    |
| 정 부 기 관 | 87         | 297,505     | 5,996      | 6,079      | 2.04    |
| 기 업 체   | 16,950     | 3,550,370   | 63,112     | 46,674     | 1.31    |

<그림 4-10> 정부 및 민간부문 의무고용률 추이



□ 직업재활사업 :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, 직업적성평가, 직업능력평가, 직업훈련, 취업알선, 취업후 적응지도,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

○ 직업재활사업은 노동부, 복지부, 교육부 소관 기관이 각기 실시

- 노동부 소관기관 72개소

·공단 산하 능력개발센터 5개소 및 공단이 지정, 지원하는 훈련기관 중 노동부 소관기관 67개소 (공단 지사 14개소는 제외한 수치)

- 복지부 소관기관 419개소

·이 중 일부는 공단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훈련기관(안마사 수련원 8개소, 직업재활시설 중 직업훈련시설 7개소, 장애인복지관부설 직업평가센터 6개소)

·복지부 소관기관 중 168개소는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

<표 4-6> 장애인고용관련 직업재활사업 실시기관 현황

| 소관부처    | 실시기관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수 (개소)  | 근거법률                 | 재정지원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|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| 529 (168)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노동부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| 72 -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공단지영 직업능력개발센터 | 5 -       |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      | 고용촉진기금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공공직업훈련시설                  | 51 -      | 직업능력개발법              | 산재기금, 고용촉진기금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지정직업훈련시설                  | 14 -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시설            | 2 -       | 산재보험법                | 산재기금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복지부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| 419 (168)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장애인복지관(직업재활센터)            | 130 (37)  | 장애인복지법,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| 복지부, 지방자치단체, 고용촉진기금 |          |
|         | 장애인복지관(직업평가센터)            | (6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장애인복지단체                   | 37 (37)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장애인<br>직업재활<br>시설         | 근로작업시설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24 -   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호작업시설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144 (49)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업활동시설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65 (32)  |
| 직업훈련시설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 (7)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안마사 수련원 | 8 -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교육부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| 38 -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               | 38 -      | 특수교육법     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- 주 1. 기관수 중 괄호 안의 수치는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의 개소 수임.  
 2.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체 조직은 기관수에 포함치 않음(공단지사는 14개소)  
 3. 복지부 소관 기관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을 제외함  
 4. 장애인복지관은 대체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므로 총수를 표기함  
 5. 교육부 소관 기관 중 특수교육기관 자체의 직업교육은 표시하지 않음

- 교육부 소관기관 :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 38개교
  - 이 중 34개교는 공단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훈련기관
  - ※ 교육부 소관 기관 수 38개소는 특수학교 자체의 직업교육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
-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특수교육기관에서 직업재활사업(직업교육) 실시
  - 직업교육은 ① 특수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과 ②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대상의 전공과 제도 ③ 일반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직업교육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
  - 특수학교의 직업교육
    - 특수교사 중 직업교육을 전공한 직업교육전문교사는 총 180명 (맹학교의 이료(理料)교사 47명을 합한 수치) → 특수교사 총수(5,604명)의 3.2%
    - 주된 직업교육 과목은 공예, 포장·조립·운반, 농업, 전자조립, 제과·제빵, 정보처리, 상업디자인, 이료, 서비스업 등
    - ※ 이료(理料) : 침술 및 안마로서 시각장애아 학교의 주된 직업교육과목
  - 전공과 제도
    - ’05년 12월말 현재 전국 38개 특수학교에서 98개 학급의 전공과를 설치·운영 중이며, 재학생은 978명
    - ※ 전공과 설치 38개교는 정신지체학교가 29개교(76.3%)로 가장 많으며, 시각장애 5개교, 정서장애 2개교, 지체부자유 학교와 청각장애 학교 각 1개교 순임
    - ※ 정신지체학교에 설치된 전공과 재학생이 796명(81.4%)으로 가장 많고, 지체부자유학교 전공과 112명, 시각장애 전공과 102명 등임
    - 전공과의 주된 교육과목은 조립(19), 목공·도예·수직·재봉·칠보 등 공예(14), 재배·원예 등 농업(10), 제과·제빵(7), 단순작업 하청 등 용역(5), 이료(4), 포장(3), 컴퓨터 등 전산(2)의 순 (괄호 안은 운영 학교 수)
  -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: 상업·공업·정보·디자인·농업·해양고 등 전국 84개 실업고에 설치

<표 4-7>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 (’05년 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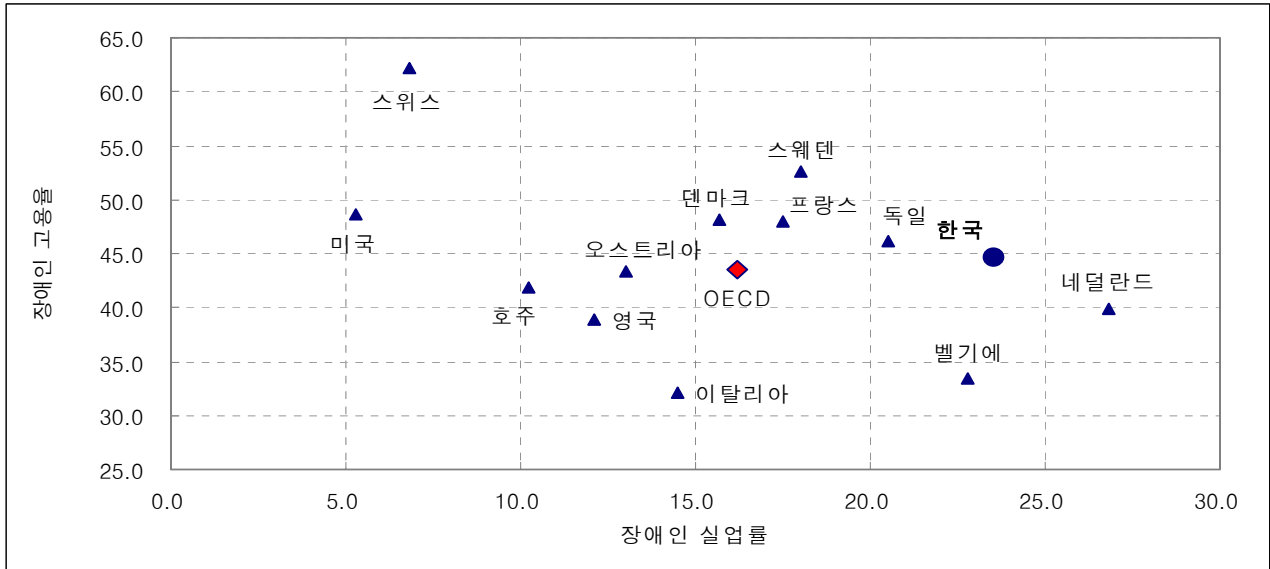
| 장애영역별 | 계      | 시각장애 | 청각장애 | 정신지체 | 지체부자유 | 정서장애 |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|
| 특수학교수 | 142    | 12   | 18   | 87   | 18    | 7    |    |
| 전공과   | 설치학교수  | 38   | 5    | 1    | 29    | 1    | 2  |
|       | 학급수    | 98   | 13   | 4    | 77    | 1    | 3  |
|       | 학생수(명) | 978  | 102  | 41   | 796   | 112  | 27 |

자료: 교육인적자원부(2005), 『특수교육 실태조사서』.

## ② 문제점

-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가 낮음
  -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편
    - 장애인고용률 : 우리나라 44.7%, OECD 평균 43.2% (20~64세 장애인)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매우 높으며 소득수준도 낮은 편
  - 이는 현행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자체의 근본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문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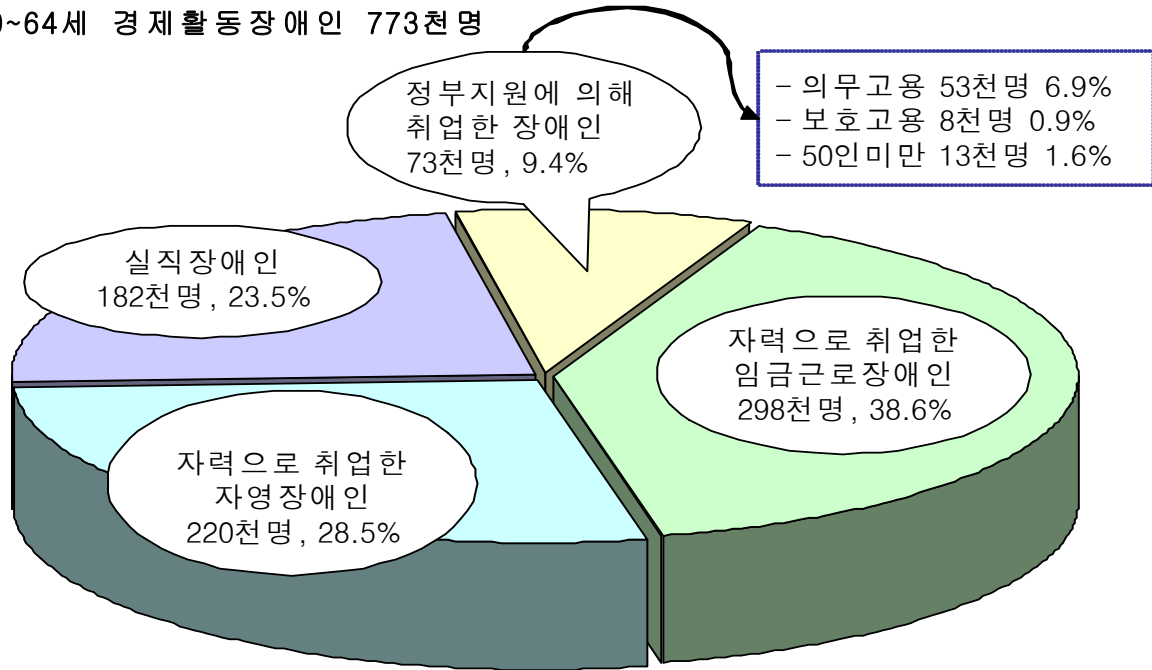
<그림 4-11> OECD 주요 국가의 장애인 고용률 및 실업률



- 정부지원에 의한 고용 영향률 미미
  - 정부지원에 의해 취업한 장애인은 72.9천명으로 추정
    - 의무고용장애인은 약 53천명 : 이는 임금근로장애인 371천명의 14.3%이며, 취업장애인 591천명의 9.0%, 경제활동장애인 773천명의 6.9%에 해당
    -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7.4천명이며, 50인 미만 사업장 중 장려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12.5천명
      - ※ '05년 말 현재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7,684명이며 이 중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329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장애인은 7,355명임
  - 이들을 모두 합한 72.9천명이 정부지원에 의해 취업한 장애인근로자
    - 이들은 임금근로장애인의 19.6%, 취업장애인의 12.3%, 경제활동장애인의 9.4%에 불과

<그림 4-12> 취업장애인의 정부지원 여부별 분류

\* 20~64세 경제활동장애인 773천명



o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거대한 사각지대 존재

- 고용의무장애인 69천명을 모두 고용해도 이는 임금근로장애인의 18.6%, 취업장애인의 11.7%, 경제활동장애인의 8.9%에 불과
- 따라서 의무고용률 2%를 완전달성 하더라도 자력으로 취업하는 장애인은 경제활동장애인의 80~90%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

※ 외국과의 비교 (자료의 제약으로 제한적인 비교에 그침)

- OECD 국가 중 의무고용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스페인을 제외하면 대개 4~7%의 의무고용률 시행중
- 이들 국가의 의무고용 순응률은 대개 50~70% 사이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음

\* 의무고용 순응률 :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기업의 비중

<표 4-8> OECD 주요국의 의무고용률과 순응률

|       | 할당               | 순응률            | 장애인 고용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오스트리아 | 4% (중증 2배 가중)    | 64%            | 43.4    |
| 프랑스   | 6% (중증 2배 가중)    | 67%            | 47.9    |
| 독일    | 5% (중증 2, 3배 가중) | 57%            | 46.1    |
| 한국    | 2%               | 공공 72%, 민간 47% | 44.7    |

- OECD 국가는 장애인구의 비중이 우리보다 높고 의무고용률과 의무고용 순응률도 우리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고용영향률도 우리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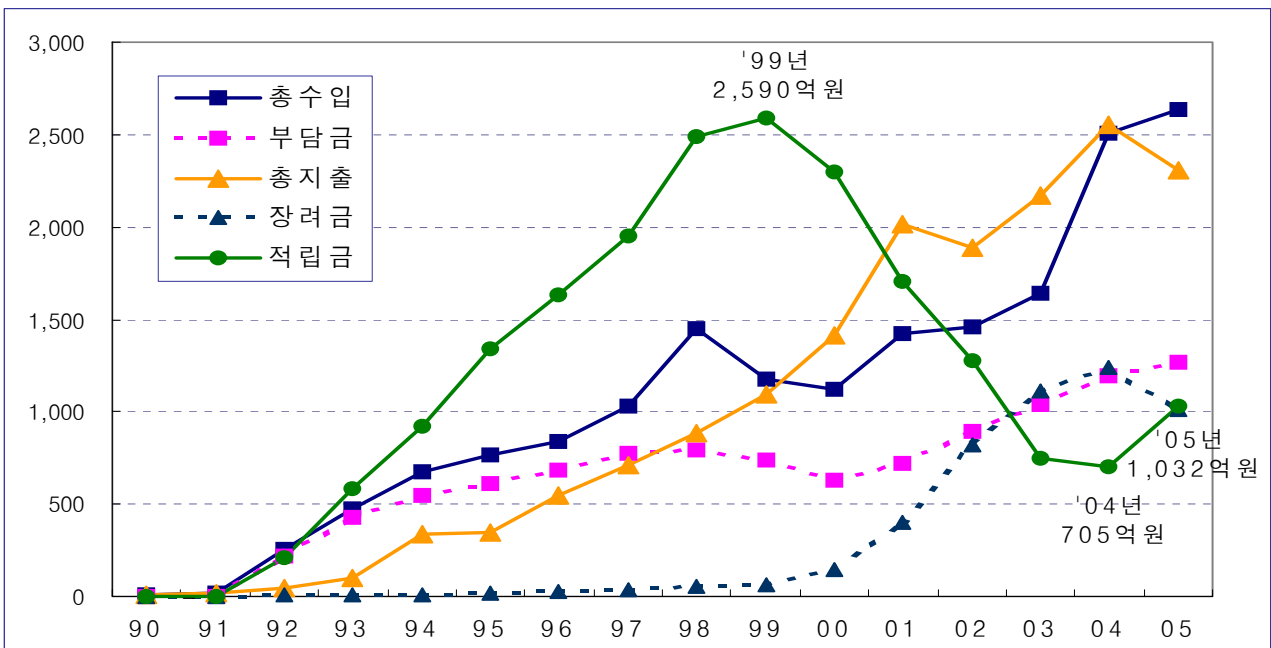
□ 실업자를 관리하지 못하는 절반의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

- ’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실업자는 182천명(20~64세 장애인)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취업알선망과 등록제도 어디에도 이들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가진 곳은 없는 상황
  - 실업한 장애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도 적절히 제공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고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모수도 적절히 추정할 수 없는 상황
- 거대한 사각지대와 실업자를 관리하지 못하는 현재의 고용 및 직업재활 체계 하에서 의무고용률의 달성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의미 반감
  -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더라도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자체의 한계때문에 직업능력이 이미 있는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에 치중될 우려
  - 따라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더라도 장애인들의 복지체감도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

□ 고용촉진기금의 재정적자 문제

-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기금의 재정적자 문제 발생
  - ’04년 장려금 단가 인하 후에도 ’05년 적자보전을 위해 1천 억원 투입
  - ※ 장려금 지급단가 : 474천원(’03년) → 300~400천원으로 인하(’04년)

<그림 4-13> 고용촉진기금의 수지 및 부담금·장려금·적립금 추이





<표 4-9> 고용촉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 추이

| 연도     | ’90 | ’91 | ’92 | ’93 | ’94 | ’95~’02 | ’03 | ’04 |              | ’05            |
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| 당초  | 수정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금액(억원) | 10  | 13  | 26  | 9   | 7   | 매년 10   | 20  | 30  | 430<br>(674) | 100<br>(1,022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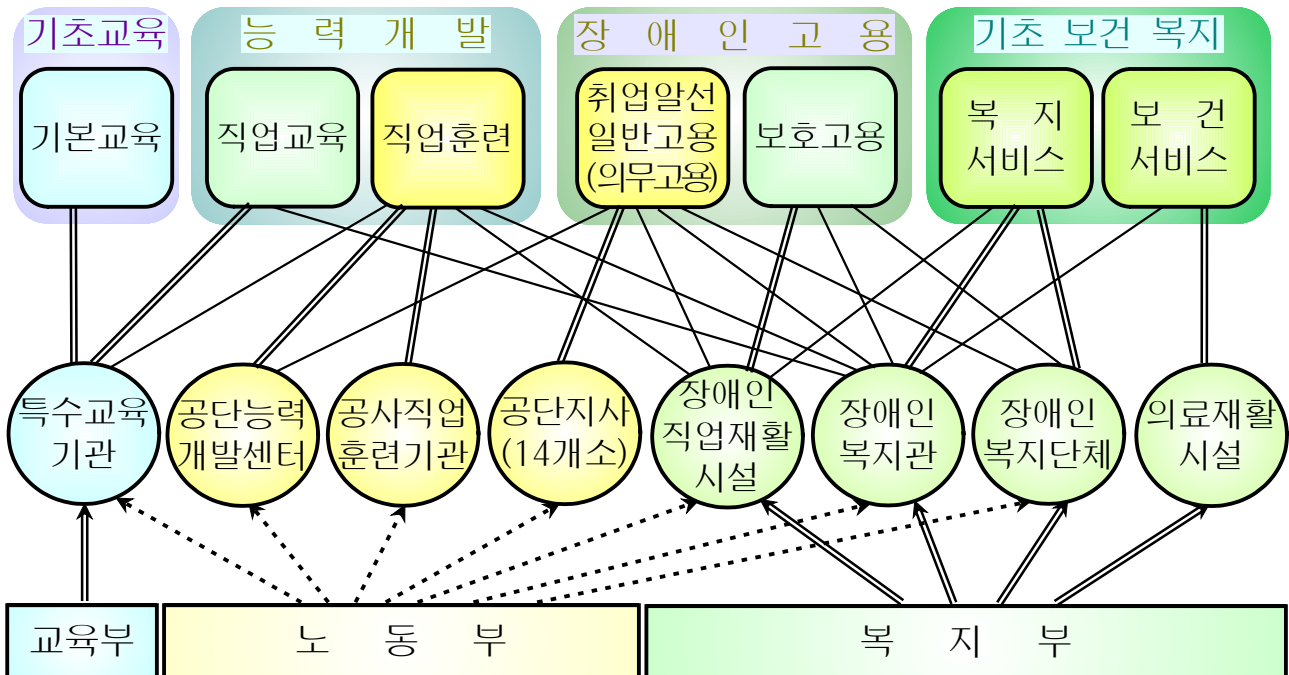
주 1. ’04년의 경우 일반회계 430억원 외에 복권기금 244억원 투입  
 2. ’05년의 경우 일반회계 100억원 외에 복권기금 122억원 및 재특용자 800억원 투입

- 기금 재정문제의 근본원인은 직업재활서비스조차 기금으로 충당해 온 데 있음 → 이는 장애인고용과 관련, 일반회계와 고용촉진기금 간의 역할분담 원칙이 적절히 수립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임

□ 고용·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혼란

- 장애인 고용에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수많은 실직장애인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데에는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혼란도 중요한 원인
- 현재 직업재활서비스는 복지부, 노동부, 교육부 소관 기관들이 각자 제공하고 있어 기관 간 정보교류 부재, 상호 연계 결여 등의 문제점이 상존

<그림 4-14> 장애인 고용관련 각종 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예산흐름



주 : ——— 주기능, — 부기능, ⇒ 정부재정지원, ..... 고용촉진기금지원

- 실직장애인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복지부 소관기관과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노동부 소관기관 간 정보교환과 서비스연계가 부재
- 서비스 사각과 중복의 공존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조정할 수단도 결여
- ※ 최근 일부 복지관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크지 않은 상황

-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보호고용의 기능보다는 단순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전락한 상황으로 전이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
- 직업재활시설의 '05년 1년간 전이실적은 시설당 평균 1.7건
- ※ 직업재활시설 개소당 평균 근로장애인은 29.9명. 위의 전이실적 1.7건은 직업훈련시설의 전이실적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건 미만임
- 전이실적이 1건이라도 있는 시설은 전체의 21.8%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이 후 취업처도 동일유형의 직업재활시설인 경우가 대부분. 일반사업체로 취업한 경우라도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체에 취업함
- 고용촉진기금의 일부(전년도 부담금수입의 2/9 해당액, 연간 약 170억원)가 직업재활시설에 투입됨으로써 감독체계 이원화 등에 따른 비효율과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

#### □ 비체계적인 직업교육

- 전문적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
- 특수학교의 직업교육교사는 시각장애아를 위한 이료교사 47명을 제외하면 133명에 불과하여 매우 부족한 상황
- 직업지도에 필요한 실습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실습장이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하기에는 한계
- 능력에 맞는 합리적인 배치 및 체계적인 전환교육 부재
- 장애학생 배치시 직업능력평가에 기초한 배치 부재(대부분 서류심사)
- 일반소양교육, 직업적응교육, 직업교육의 체계적 연계 부족
- 교육기간 연장의 일환으로서의 전공과
- 별도의 직업교육 제공이라는 전공과 제도의 원래 목적이 교육기간(실질적으로는 보호기간) 연장의 일환으로 변질된 상황
- ※ 최근 특수학교에는 주로 중증장애학생들이 재학하여 이 문제는 더욱 심각화

### ③ 추진계획

#### □ 의무고용제도 재편

- 현행 의무고용제도를 직업적 장애인 대상으로 전환(’10)
  - 직업적 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고용선진화 계획에 의한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를 통해 해결(고용안정센터에서 주로 담당)
  - 의무고용제도의 전환을 위해 직업적 장애 개념 및 판별기준 수립
    - ※ 직업적 장애개념 및 판별기준은 장애인 사례관리지원체계 시범사업 기간 중에 별도의 연구·검토를 거쳐 수립하며, 동시에 이 기간 중에 직업적 최종증장애인 고용시 가산제도 도입타당성도 검토 (장애인 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방안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서 후술)
  - 직업적 장애인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
    - ※ 현재 장애정도만 고려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제를 장애유형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 및 장애인의 재활치료·건강검진 등의 사유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도 등의 도입타당성 검토
-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의무고용제도 운영과 직업적 장애인 대상 직업 재활 및 고용분야의 사례관리지원체계 (통합고용지원팀) 운영을 담당
  - ※ 사례관리지원체계 및 통합고용지원팀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서 후술
  - 이와 함께 공단은 직업재활전문인력 양성기능도 담당
    - ※ 현재 장애인고용 전문요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연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범위 설정
  - 공단과 기타 기관 간 고용지원서비스 연계강화방안 마련
    - “근로를 위한 바우처 제도(예, 미국의 Ticket to Work)” 등을 도입(’11년), 공단과 복지관 간 고용·직업재활서비스 연계 강화
    - 바우처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’08~’10년간 시범운영 실시
- 의무고용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 추진
  - 직업평가사 인력을 중장기적 계획 하에 확충
    - 직업적 장애인 여부의 판정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·군·구 또는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의 판정을 담당하는 직업평가사 인력의 확충 필요
    - 1단계로 직업평가사와 직업재활사의 자격을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중장기적 인력소요 전망추계 및 인력양성체계 구축작업을 추진, 이에 근거하여 3단계로 직업평가사 인력의 확충을 본격 추진

- 공단지사의 단계적 확대 및 기존 지사의 규모 조정 추진
  - 직업적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높을 것이므로 이들의 취업알선을 담당할 공단지사조직의 확대가 필요
  - 이와 함께 공단지사 당 근무인원의 규모조정도 추진하며, 공단과 복지관 등과의 네트워크 체제 구축 및 시·군·구 등에서의 인력배치 등도 추진하여 물리적 조직 확대 필요성 최소화
  - 공단지사 확대 및 인력조정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(’07), 단계적으로 접근

□ 직업재활시설 재편

- 기본방향 : 사실상 보호시설화한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시설로 재분류하고, 보호고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만 보호고용시설로 분류
- 직업재활시설에 지급되던 고용장려금과 직업재활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되 연구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
- 보호시설로 재분류된 시설은 일반회계 지원으로 운영. 기존 직업재활 서비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 운영
- 보호고용시설로 재분류된 시설은 전국적 네트워크 체제로 재편성하여 상호 연계 하에 운영
- 정부 및 대기업과의 연계활성화를 통해 보호고용 전국네트워크 체제의 운영 원활화 도모
  - 보호고용에서 생산가능한 품목(예 : 군복, 칫솔 등)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방안 검토
  - 현행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를 개선하여 대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
- 전국적인 네트워크 체제의 운영주체는 사례관리지원체계 시범사업기간 중의 준비기간 및 시험운영기간 동안의 평가를 통해 결정
  - ※ 사례관리지원체계 시범사업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서 후술
- 직업재활시설 재분류를 위한 평가·연구 및 보호고용 전국 네트워크 체제 구축방안 연구는 복지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수행

□ 직업교육체계의 개편

- 통합고용지원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특수교육기관·복지관 등을 연계하여 지역별 직업교육네트워크 체제 구축

- **약보고서**와 함께 현재 특수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업교육은 노동부로 이관
  - 재학장애학생 대상 직업교육도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졸업을 앞둔 장애학생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설치될 통합고용지원팀으로 의뢰하여 전환계획 수립, 전환서비스 제공
  - **다**만, 현재 노동부의 직업교육 인프라가 충분치 않고, 다른 복지시설도 **가** 충분치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전공과 유지
- 재정역할 정상화
  - 부담금 및 일반회계 등 간의 역할분담 원칙 확립
  - 재정역할구분의 구체적 방안은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’07년에 결정
    - 사례관리지원체계(통합고용지원팀) 시범사업의 진행과정, 직업재활시설 재분류 결과, 보호고용 전국네트워크 체제 구축 준비작업의 경과 등을 고려하고, 직업재활사업의 구체적 항목을 검토하여 ’10년까지 단계적 이행 방안 마련
- 유형별 고용지원 대책 추진
  - 지체·청각장애인
    - 기본적으로 고용선진화 계획을 통해 고용대책을 추진하되 직업적 중증의 경우에는 보조공학서비스를 통해 접근
    - 활동보조인, 수화통역사 등을 활용하여 고용촉진 및 유지
  - 시각장애인
    - 건전안마센터 설치·운영
      - 건전안마센터를 ’10년까지 300개소 건립, 시각장애인 안마사 4,500명 고용
      - ※ ’07년 10개소, ’08년 90개소, ’09~’10년 각 100개소 (개소당 시각장애인 15명 고용)
    - 적합직종 개발 및 공공시설 자동판매기·복권판매소 시각장애인 할당 확대 검토
    -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일반기업에의 취업 유도
    - 전국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한 보호고용 유도
      - ※ 대기업과의 장애인 고용협약 체결 및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고용 방안 등도 검토 (대기업과의 고용협약체결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이미 시도 중)
  - 정신지체·발달장애·뇌병변
    - 전국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한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을 통한 일반고용
    - 활동보조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취업촉진

- 정신장애인 : 전략직종 개발을 통한 취업증진 모색
- 내부장애인 : 단시간근로제 강화 및 휴가지원 강화
- 장애유형별 취업대책이 지역 단위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도 동시에 추진 (시·군·구 사례관리지원팀 및 통합고용지원팀 구축)
  - ※ 사례관리지원체계 및 통합고용지원팀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서 후술

## 2.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

### 1)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

#### ① 추진현황

-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」 제정 및 시행(’06.1)
  - 동법에 따라 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5개년계획’을 수립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·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연차별 개선계획 도출
    - ※ 현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이에 의거 ’06. 12까지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바탕으로 시·군 단위의 ‘지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’ 수립
- 장애인을 고려한 대중교통수단·교통시설 개선
  - 장애인의 대중교통이용 지원을 위해 휠체어의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(222대 도입, ’05년말 기준)
    - ※ ’04년부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을 지원. ’05년에는 도입지역 (7대도시→전국), 도입 목표기준( 시내버스의 10→50%) 상향조정
  - 도시철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역사에 1역사 1엘리베이터 설치
    - ’02~’08년까지 도시철도 역사의 엘리베이터/에스컬레이터 설치 완료 추진
    - ※ ’05년말 기준으로 엘리베이터 73.9% 설치 완료
-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door-to-door 서비스 제공
  - 장애인 콜택시 등의 도입 의무화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
    - ※ 「교통약자법」상 특별교통수단 최소 도입 규모 : 인구 100만 이상(80대), 인구 30만~100만 (50대), 인구 10만~30만(20대)

□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보행환경 조성

- ‘보도설치 및 관리지침’ 제작·배포(’04년)
- ’00년 제정된 ‘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’ 중 ‘장애인 안전시설편’의 기준에 따라 국도변 보도 확충
  - ※ ’05년 43km(50억원) 설치 완료, ’06년 124km(149억원) 확충 계획

② 문제점

□ 장애인의 연속적인 이동 동선 미확보

- 과거에는 건축물·도시·도로 등의 설계 단계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편의시설 설치 부진
  - ’85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최초 규정되었으나, 이동성에 대한 고려는 미흡
    - ※ ’06년 「교통약자법」 시행 등 최근 장애인 이동성에 대한 관심 증가
- 이동편의시설을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개별 건축물 단위로 설치한 결과 실제 사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연속적인 이동 동선 확보에 한계
  - ’05년 기준으로 출입구 접근로 등 교통시설의 이동 편의시설 설치율은 72.7%, 공공기관은 84.3%에 이르나, 실질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평가 미흡
    - ※ 지하철 역사 등 일부시설만 이용가능성 평가 실시(’05년)
- 편의시설의 설치·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적정설치, 유지·보수 어려움
  - 건축물 준공검사시 별도의 체계적인 이동편의시설 점검목록 없이 설치 여부만 확인하고, 설치 이후 파손에 대한 관리없이 방치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※ 장애인 이동권 실태(’04, 보건사회연구원)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●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: 68%        | ● 보도 이용 어려움 : 63%       |
| ● 교통시설 이용 어려움 : 57%        | ● 보도 장애물로 인한 부상경험 : 53% |

③ 추진계획

□ 신도시·신규시설에 장애친화(barrier-free) 환경 조성 제도화

- 각종 도시계획기준에 ‘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연속적인 이동동선 확보 방안’에 대해 규정
  - 현재 장애인의 이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①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② 기업도시 계획기준 ③ 혁신도시 계획기준에 규정 추가

**요약** - 연속적 보행 네트워크의 구축과 「교통약자법」상 교통정온화 기법을 통해 신규 도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이동을 확보

**보고** ※ 교통정온화(traffic calming) 기법 : 자동차의 속도를 감소시키고, 보행자의 연속적 이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고원식 교차로, 과속방지턱 등이 있음

**성로가** 이동에 제약이 없는 도시환경을 위하여 개별 건축물과 택지개발사업지를 대상으로 ‘장애물 없는 도시 인증제도’ 도입

건교부의 「교통약자법」, 복지부의 「편의증진법」상 대상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장애친화(barrier-free) 인증 실시

※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,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등을 통해 관련 건축물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음

※ 일본에서는 건축물의 장애친화(barrier-free) 정도를 평가하는 하트빌딩(Heart building)제도 운영

○ 건축물 준공검사시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검사목록을 마련하여 규정 준수 여부 평가

- 현재 이동편의시설 적정, 부적정 여부만 판단하는 검사를 내실화

- 이동편의시설의 실질적 이용 가능성이 반영되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시 이용주체인 장애인 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

※ 복지부와 건교부가 협의하여 체크리스트 작성, 장애인단체 참여방안 등 마련

○ 건축사 자격증 기취득자에 대하여 「편의증진법」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관련 규정 교육 강화

- 건축사예비시험에 「편의증진법」이 포함된 ’05년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장애인 이동관련 교육을 통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제고

□ 교통시설의 이동편의 향상

○ 장애인을 배려한 교통 수단·시설 개선

- ’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% 교체를 목표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표준형 저상버스 개발을 통하여 조기 완료 추진

- ’08년까지 도시철도 역사내 엘리베이터/에스컬레이터 설치 완료추진

- ’지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’(’07년 수립 예정)에 의한 특별 교통수단 도입계획에 따라 권역별 특별운송서비스 제공



※ 도입시기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하고,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등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

○ 지자체의 교통복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**교통복지지표 개발**

- 이동편의시설 설치율, 저상버스 도입률, 이면도로 정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지표화하고 평가하여 지자체의 교통복지 정책 수행 독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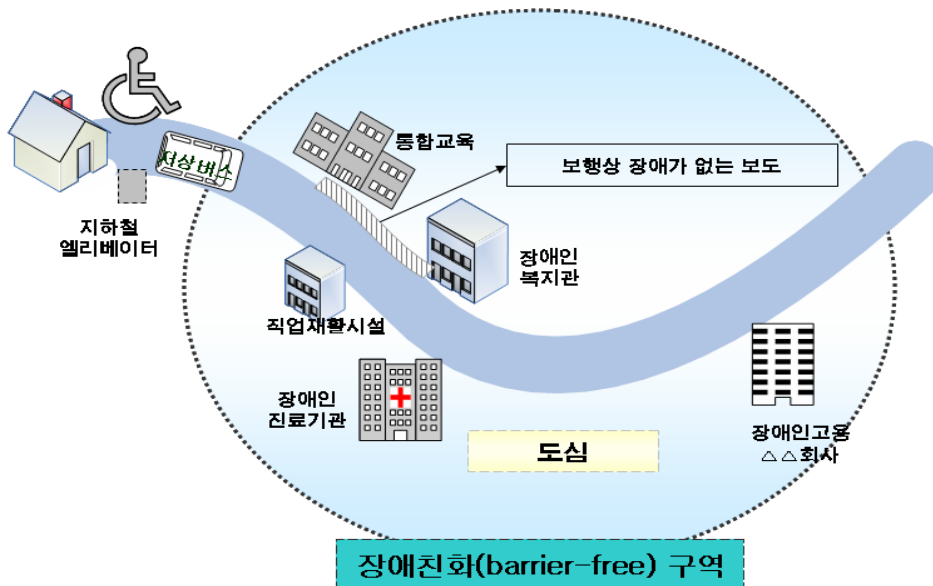
□ 기존 도시 내의 보행환경 개선

○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1시군구당 **1개소 이상의 보행우선구역 운영 독려**

- 인구 10만 이상 도시(79개)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 **장애친화(barrier-free)구역 시범사업 실시**
- 시범사업 실시 구역 외에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‘보행우선구역’을 지정·운영하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포함

※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중교통시책평가, 교통문화지수 등에 반영 검토

<그림 4-15> 장애친화(barrier-free) 구역 개념도



○ ‘보행우선구역 표준화 설계지침’을 제작·보급하여 「교통약자법」 시행(’06.1)으로 도입된 보행우선구역제도 운영 활성화

- 고원식교차로, 요철포장, 보행섬식 횡단보도,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우선구역상 보행시설물의 설치방법을 상세하게 규정

□ 이동편의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

- 장애인 이동편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보수 독려
  - 지역의 장애인 관련 단체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, 권역내 중심 상업지구를 선정하여 보도파손,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을 파악
    - ※ 1차적으로 7대도시의 중심상업지구(2개소 이상)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
- ‘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’을 마련·보급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법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지원
  - 「교통약자법」 적용시설인 교통수단·교통시설·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대상으로 매뉴얼 제작
- 건축법상의 건축지도원 제도 활용
  -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·관리되는지 확인·지도·단속하기 위해 지정하는 건축지도원 제도를 활용하여 편의시설 유지·관리
  - 건축지도원을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정하고 건축지도원이 활용할 매뉴얼이나 점검목록 작성·보급
- 규정에 맞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보도 개·보수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
  - ※ 국도(14,224km, 전체 도로연장의 13.9%)상 보도에 대해서는 건교부, 지방도(17,710km, 전체 도로연장의 17.3%) 보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행

## 2)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

### ① 현황 및 문제점

#### □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시책 부재

- 재가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, 이동, 활동에 대응되는 적합한 지원제도가 상당히 미약
  - 돌봐줄 사람이 없는 재가중증장애인이 장애인요양시설로의 입소로 이어져 사회격리 초래
- 장애인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는 대상자와 지원횟수가 제한적이고 가정 내 목욕, 청소, 건강관리, 물리치료 등에 그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강화와 참여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
- 전체 장애인의 약 16.6%(348,775명)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,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,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의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

※ 전체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이 ‘대부분 필요’ 9.2%, ‘거의 남의 도움 필요’ 7.4% (보건사회연구원, ’05 장애인실태조사)

- 재가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 영위를 가족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, 가족의 사회·경제활동 제약 초래

## ② 추진계획

### □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

#### ○ 대상자 및 지원시간

- 지체, 뇌병변 1급 장애인 중 장애가 최종증인 경우와 시각장애인 1급을 대상으로 ’07년에 시범사업 추진

<표 4-10> 활동보조인 제도 수혜 대상

(단위 : 명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초수급  | 차상위   | 비 고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지체·뇌병변1급 최종증<br>(양손양하지, 일손일하지 장애) | 4,369 | 1,614 | ’07년부터 |
| 시각 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024 | 3,500 |        |
| 정신지체 1급<br>발달장애 1급                | 2,667 | 648   | ’11년부터 |

주 : 연령은 20세~64세의 성인장애인(장애학생은 7세~19세)

자료 : 보사연(2005). 『’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』

#### ○ 서비스제공방식 : 바우처모델 도입

- 활동보조인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장애인은 시·군·구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사업수행기관에 등록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은 후 바우처를 지급
  - ※ 사업수행기관은 시범사업 후 확정하되, 시범사업시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선정하는 안 검토·추진
- 장애인으로부터 바우처를 받은 활동보조인은 시·군·구에 해당분의 금액을 청구하여 수령

### □ 기대효과

-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범위 확대를 통한 참여도 제고 및 취업 기회 확대
- 장애인 부양 부담 경감을 통해 가족 해체 방지 및 가족 친화 도모
- 경증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(’07년 최소 3,000여명, ’11년까지 최소 30,000여명) 기대

### 3) 자막방송

#### ① 현황 및 문제점

□ 자막방송에 대한 낮은 인식

- 장애인은 이동불편으로 인해 정보접근 및 여가활용을 TV·인터넷 등을 통해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막방송을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'부가서비스'로 인식하는 등 배려 부족

※ 장애인 외에 외국인 노동자,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에게도 우리말 습득을 위한 학습도구이자 생활정착을 위한 도구로 활용 가능

□ 자막방송 기술여건상의 애로

- 방송환경의 급변으로 기술적 안정성 및 콘텐츠 제작 애로 발생
  - 아날로그 환경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TV방송의 기술표준 문제 및 TV 수상기 보급문제 대두
  - 케이블TV, 위성방송, DMB 등 뉴미디어방송이 출현하면서 방송 송신 및 시청환경의 변화 발생

#### ② 추진계획

□ 자막방송을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·시행

- 지상파 3사(KBS, MBC, SBS) 우선 추진
  - 단계적으로 지역지상파, 공공채널, 공익성채널 등 뉴미디어까지 확대
  - 향후 제도정비를 통해 지상파는 의무화하고, 뉴미디어는 자율권고사항으로 하여 방송사업자 방송평가 및 (재)허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추진

<표 4-11> 자막방송 확대시행 추진 일정

| 구분 | 지상파 3사   | EBS 및 지역 지상파 | PP 등 뉴미디어 |          |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공공채널      | 공익성채널    | 기타   |                   |
| 방송 | '06년 하반기 | '07년 하반기     | '08년 상반기  | '08년 하반기 | '10년 | ○ 지상파 이외는 자율 권고사항 |
| 준비 | -        | '06~'07년     | '07년      | '07~'08년 | '09년 | -                 |

- '06년 가을개편(9~10월 예정)시 자막방송 편성 확대·시행
  - 지상파 3사(KBS, MBC, SBS) 방송프로그램의 70%까지 자막방송 편성

<표 4-12> 방송사별 자막방송 편성계획

(단위: 분, %)

| 구 분     | 평균    | KBS   | MBC   | SBS   | 비고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주간 방송시간 | 8,370 | 8,370 | 8,360 | 8,380 | '06년 5월<br>기본편성 기준 |
| 추정 편성시간 | 5,860 | 5,860 | 5,850 | 5,870 |                    |
| 추정 편성비율 | 70    | 70    | 70    | 70    |                    |

주 : 스포츠중계, 즉흥대사(ad-lib)가 많은 생방송 개그프로그램 등 현 시스템에서 자막방송 구현이 어려운 일부 프로그램은 제외

□ 방송수신기 보급 지속적 확대

- 아날로그 방송시청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지속적 확대
  - '06년까지 자막방송 수신기 19,087대(12.6%) 보급(한국농아인협회)
  - '09년까지 청각장애인의 30% 수준(45,355대) 보급목표로 추진

<표 4-13>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계획

| 구분 | '00~'05년 | '06년   | '07년   | '08년    | '09년    | 계       |
|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보급 | 14,087대  | 5,000대 | 6,000대 | 10,134대 | 10,134대 | 45,355대 |

- '07년부터 청각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에게도 '09년까지 총 6천대 보급
- 아날로그방송 종료 후에는 DA방송수신기(D-to-A converter) 보급
  - 2010년부터(예정) 아날로그 수상기 보유자 대상 보급
  - DA방송수신기 제품개발 시 자막방송 수신 칩 내장 의무화 추진

※ DA방송수신기(D-to-A converter)

-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방송으로 전환해 주는 셋톱박스
- 방송프로그램 신호(signal) 뿐만 아니라 디지털자막방송 신호도 아날로그 자막방송으로 전환해 주는 칩(chip)을 내장

\* 미국에서는 '07년 시판(대당 50\$ 수준)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, 저소득층에게는 '바우처(voucher)'제도를 통해 1가구당 2대까지 보급할 계획  
- 최대 15억\$의 예산을 통해 3,750만 바우처 보급 계획

□ 디지털방송환경에 대비한 제도적 정비 추진

- '07년 상반기 중 지상파 디지털 TV 자막방송 기술표준 개정

- ’06년내 DTV 자막방송 송수신 정합테스트 완료
- o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자막방송 의무화 추진

## 4) 장애인 정보접근성

### ① 추진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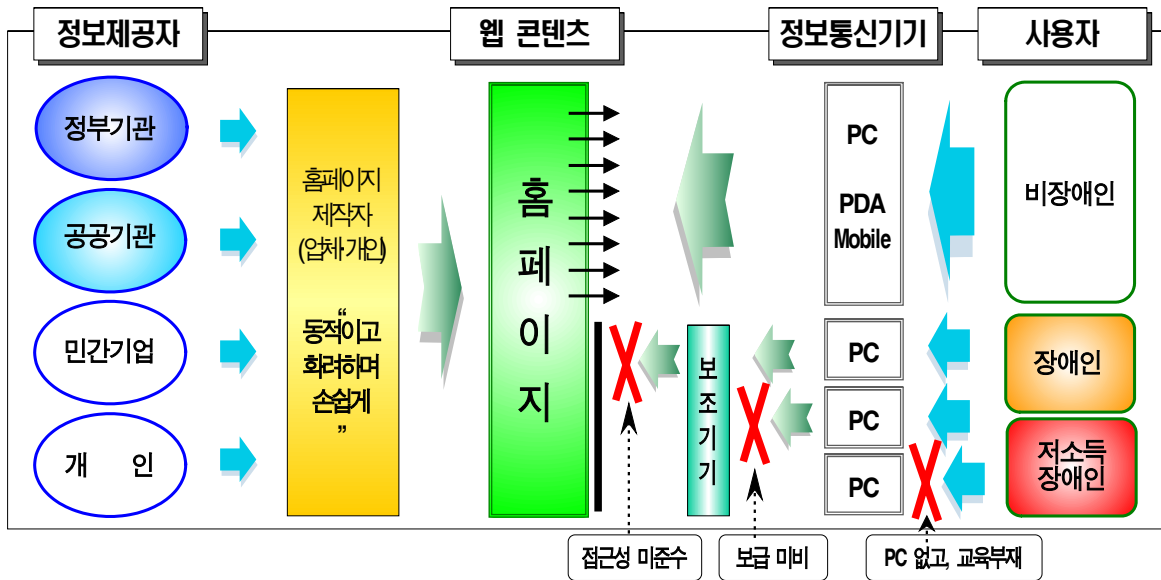
- PC 보급사업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 지원(80%)
-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정통부로 일원화하고 ’03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을 전국으로 확대
- ‘장애인 접근성 향상 권장지침(’02.2)’, ‘접근성 지침 국가표준(’05.12)’, ‘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·운영지침(’05.4)’ 등 제정·시행

### ② 문제점

-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
  - o (PC·인터넷 이용환경 측면) PC 및 통신 보조기기 개발·보급 미흡
    - PC 보급사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 지원(80%)에도 불구하고
      - 장애인 가구의 PC 보유율은 66.2%로 일반국민보다 12.3%p 낮고, 보조기기 구입비도 필수 수요 장애인의 9.1%만 지원 받음
    - 정부의 보조기기(기술) 개발과 보조기기, 특수 S/W의 보급·구매 지원 미흡
      - 시장수요가 작고 웹 기술진화에 따라 보조기기(기술)도 계속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움
  - o (정보화 교육 측면) 정보화 교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격차는 심각
    -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정통부로 일원화하고 ’03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을 전국으로 확대
      - ’99년 이후 정부지원으로 정보화 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약 19만명으로 외부신체기능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의 13%에 불과
    -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해마다 증가하여 일반 국민과의 이용률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, 여전히 30%p 정도 낮음
      - 등록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41.0%로 전체 국민 인터넷 이용률 71.9%에 비해 매우 낮음(’05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, 한국정보문화진흥원)

- (웹 콘텐츠 운영 측면)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웹 사이트들로 인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실정
  -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각종 지침의 제정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준수 미비

<그림 4-16> 장애인의 홈페이지 이용시 막힘 현상



### ③ 추진계획

-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환경 개선
  - 정보통신보조기기(기술) 개발 및 연구지원으로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기술환경을 조성하고, 장애인 대상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
    - ※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대책 보고(’06.5.22)에 포함
  - 정보통신기기 생산과정에 장애인 접근권 반영
    - 휴대폰(TTS, 음성중폭 등), 금융자동화기기(ATM) 등 정보통신기기를 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표준을 제정하고 및 기술개발 여건 조성
      - ※ 장애인, 비장애인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표준을 제정
-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의사소통환경 개선
  - PC,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
    - 정보통신보조기기(기술) 구매지원, PC·인터넷 보급 확대
      - ※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대책 보고(’06.5.22)에 포함

- 행정기관의 웹접근성 준수를 통한 인터넷 정보접근 보장
  - 홈페이지 경진대회(행자부), 웹접근성 실태조사(정통부)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한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제고
    -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웹접근성 준수를 반영(’07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와 평가를 연계)
  - 민간기업 등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
    - ※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대책 보고(’06.5.22)에 포함
- 공공기관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및 의사소통환경 개선(복지부)
  -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편의시설(이동, 정보통신보조기기 등)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의사소통매체(점자도서, 영상매체 등) 보급 확대
  - 시·군·구 및 특정민원 창구에 점자행정양식 보급 및 수화통역사 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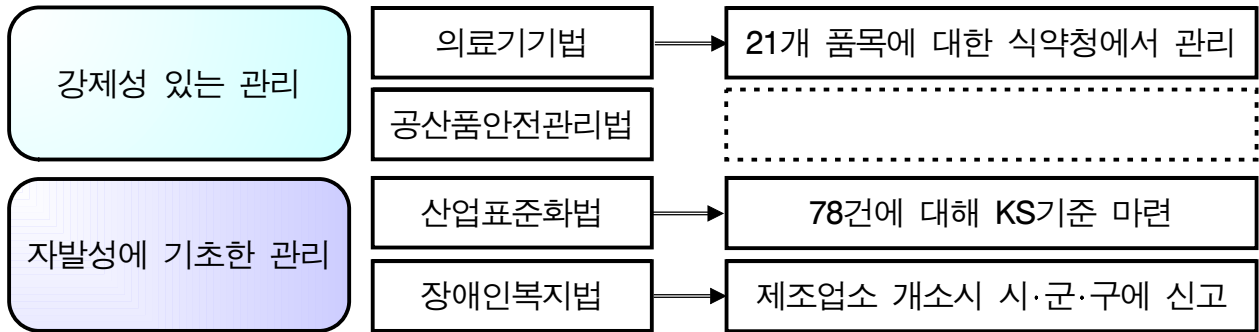
## 5) 장애인 재활보조기구

### ① 추진현황

- 재활보조기구 생산 및 품질관리 등 관련 제도
  - 재활보조기구 생산관련 제도 : 의지·보조기 제조업소 신고제 및 의지·보조기 기사 의무배치제도
  -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관련 제도
    - 「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(’02.9.19) 시행 (복지부)
      - ※ 대분류 10종, 중분류 72종, 소분류 231종
    - 21개 품목은 의료기기로 분류, 의료기기법에 의해 관리 (식약청)
    - 산업표준화법에 의거, 78건에 대해 KS기준 마련 (산자부)
    - 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」에 의한 안전검사·안전검정·품질표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(94개 제품), 재활보조기구는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
      - ※ 안전검사(의무) 34개 제품, 안전검정(임의) 31개 제품, 품질표시(임의) 24개 제품
      - ※ ’05.12.23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는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, 안전품질표시제로 변경되어 세 가지 모두 의무제도로 전환될 예정. 이에 따라 현재 산자부에서는 공산품의 합리적 재분류 방안 강구 중



<그림 4-17> 현행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체계



□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

- 노동부 산하의 재활공학연구소(산재의료원), 보조공학센터(장애인고용 촉진공단)와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운영
- 경기도 지원으로 설립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

□ 공적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

<표 4-14> 현행 재활보조기구 공적 급여제도 현황

| 부처                    | 보건복지부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보훈처          | 정보통신부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                    | 건강보험<br>급여                | 의료급여                     | 무상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재보험<br>요양급여 | 작업보조<br>기기지원             | 보철구<br>지급      | 정보통신<br>보조기기<br>보급사업 |
| 수행<br>기관              | 건보공단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·군·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로복지<br>공단   | 장애인고용<br>촉진공단            | 보훈처<br>보훈병원    | 정보문화<br>진흥원          |
| 대상                    | 건강보험<br>가입자               | 의료급여<br>수급권자             | 수급자·차상위층<br>(지체·시각·청각·<br>·뇌병변·심장) | 산재<br>장애인    | 등록장애인<br>중 근로자,<br>직업훈련생 | 국가유공<br>장애인    | 등 록<br>장애인           |
| 교부<br>품목              | 20종<br>77개 품목             | 20종<br>77개 품목            | 5개 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8개<br>품목   | 33개 품목<br>94개 제품         | 39종<br>254개 품목 | 20개 제품               |
| 급여<br>내용              | 상한액<br>범위<br>내에서<br>80%지원 | 상한액<br>범위<br>내에서<br>전액지원 | 전액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액<br>지원     | 무상임대,<br>지원              | 전액지원           | 구입가격의<br>80% 지원      |
| 지출<br>규모 <sup>1</sup> | 216.7억원                   | 178.4억원                  | 15.2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5.0억원       | 12.8억원                   | 45.4억원         | 14.0억원               |

주 1. 지출규모는 '05년 기준. (작업보조기기 지원비는 '06년 예산 기준으로는 47.4억원)

2. '05년 기준 재활보조기구 공적급여 총규모는 517.5억원

- 재활보조기구 유통 및 소비 관련 제도 :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및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
## ② 문제점

- 재활보조기구의 체계적 분류체계 미비
  - 제품·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체계적 규격 미비
  - 이로 인해 법 적용뿐만 아니라 생산·유통·판매체계의 일관성 유지와 다양한 기술 및 첨단제품 개발에 애로
- 재활보조기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·관리 부족
  - 대부분의 재활보조기구 업체는 영세한 규모이며 현재 업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의지·보조기 제조업소 신고제도가 유일
    - ※ ’01년 재활보조기구업체 실태조사시 조사대상업체 248개소의 근로자 수는 평균 6.3명, 조사대상업체 중 의지·보조기 제조업소는 185개소로 74.6%를 차지
    - ※ 유럽·미국 등의 경우에도 재활보조기구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
  - 업체관리의 미비로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에 어려움 존재
-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체계의 후진성
  - 재활보조기구 중 의료기기로 분류된 품목은 ‘의료기기법’에 의해 비교적 엄격한 관리 시행(21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에서 관리)
  - 의지·보조기(골반보조기 등 45개 품목)의 경우는 의지·보조기 제조업소의 신고제도 및 의지·보조기 기사 의무배치제도 외에는 사실상 품질관리제도가 부재
  - 일반 공산품의 경우 안전검사 및 안전검정·품질표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재활보조기구는 이에 의한 관리대상에 미포함
    - ※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전부 개정(’05.12.23)에 따라 산자부가 공산품의 합리적 재분류 방안을 강구 중이나 이 경우에도 아직은 재활보조기구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
- 연구개발사업의 후진성
  -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주체의 부족
    - 노동부 산하 재활공학연구소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보조공학센터 및 정통부의 정보문화진흥원이 연구개발기능 수행

○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

□ 유통체계의 왜곡

○ 재활보조기구 품목분류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며, 재활보조기구의 고시가격이 정밀하게 매겨지지 않은 상황

※ 동일 제품에 대해서도 업체에 따라 수십 내지 수백 퍼센트의 가격차이 존재

○ 표준적인 품목분류가 미비한 관계로 관세감면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유통 및 소비진작을 위한 제도 확대와 재활보조기구의 통합 전산관리에도 어려움 존재

○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경우 완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됨으로써 정책 효과 반감

※ 외국의 경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분류코드를 마련하여 이를 다양한 정책에 반영 → 기술개발에도 긍정적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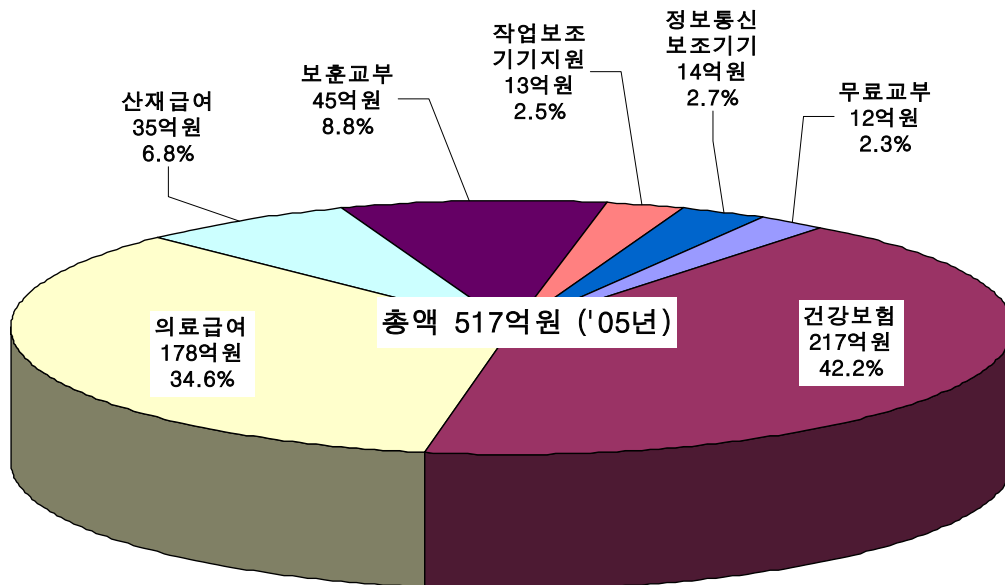
□ 공적 재활보조기구 급여에 대한 정부지출 부족

○ 공적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의 총 지출규모는 ’05년 현재 약 517.5억원으로 추정

- 이는 ’05년도 장애인관련 총지출액 2조 1천억원의 2.4%

- ’05년 재활보조기구업체 총매출액 4,577억원(추정치)의 11.3%에 불과

<그림 4-18>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 공적급여의 제도별 구성비



○ 제도별 지출구성을 보면,

-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395억원으로 76.4% 차지. 여기에 무료교부사업 13억원을 합치면 복지부 소관 공적급여액이 408억원으로 전체 공적급여액의 78.9% 차지
- 보훈처의 무료교부와 산재보험의 급여가 각각 7~8% 차지
-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작업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복권기금 지원으로 ’05년부터 시행하였으며, ’06년 예산은 47.4억원으로 크게 증가(’05년 예산은 12.8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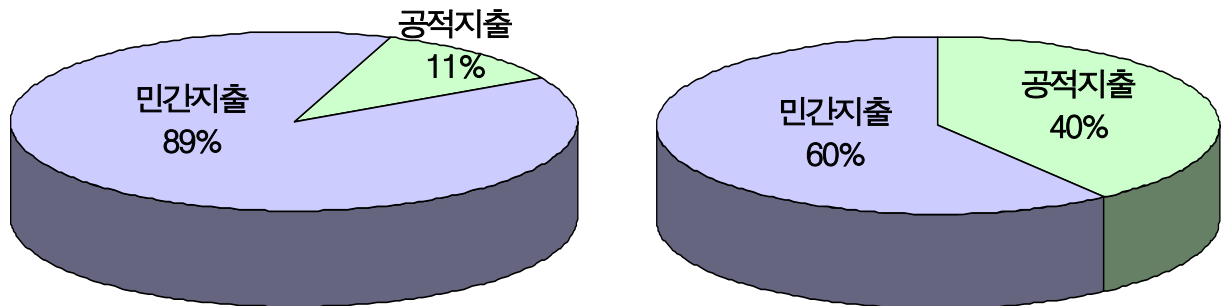
○ 공적급여규모의 외국와의 비교 (자료를 구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)

- 미국의 재활보조기구 총매출액은 약 533억 달러로 추정(’01년)
- 이 중 메디케어, 메디케이드, 무료교부 등 공적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%으로 추정
- 공적급여의 비중만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약 28% 수준

<그림 4-19> 한국과 미국의 재활보조기구 공적급여 규모 비교

한국: 총매출액 4,577억원(’05년)

미국: 총매출액 533억달러(’01년)



○ 현재 지출규모는 장애인들의 수요충족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, 재활보조기구 시장형성을 위한 수요창출 기능도 미흡

- 정부의 공적급여규모가 지나치게 낮아 재활보조기구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활성화도 미진
-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의 소득이 낮고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국가역할 미비는 장애인의 자부담증가와 유통구조의 왜곡을 초래

※ 재활보조기구 사용자의 구입비용은 평균 2,222천원(’04년)으로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1,149천원(’05년)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남 (장애인고용촉진공단, 『2004 보조공학서비스 욕구 및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』)

- 공적급여의 미미함을 보충하는 노력으로 민간단체에 의한 무료교부사업이 있으나
  - 대부분 일회성·행사성 사업에 그칠 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의 부적절성 및 과도한 공급에 따른 유통구조 왜곡 등 혼란 야기 사례도 존재
  - ※ 예 : 과도하게 공급된 재활보조기구가 다시 시장으로 흘러나와 거래되는 등 정상적인 유통구조 확립을 방해하는 부작용 발생

□ 공적급여 절차의 비효율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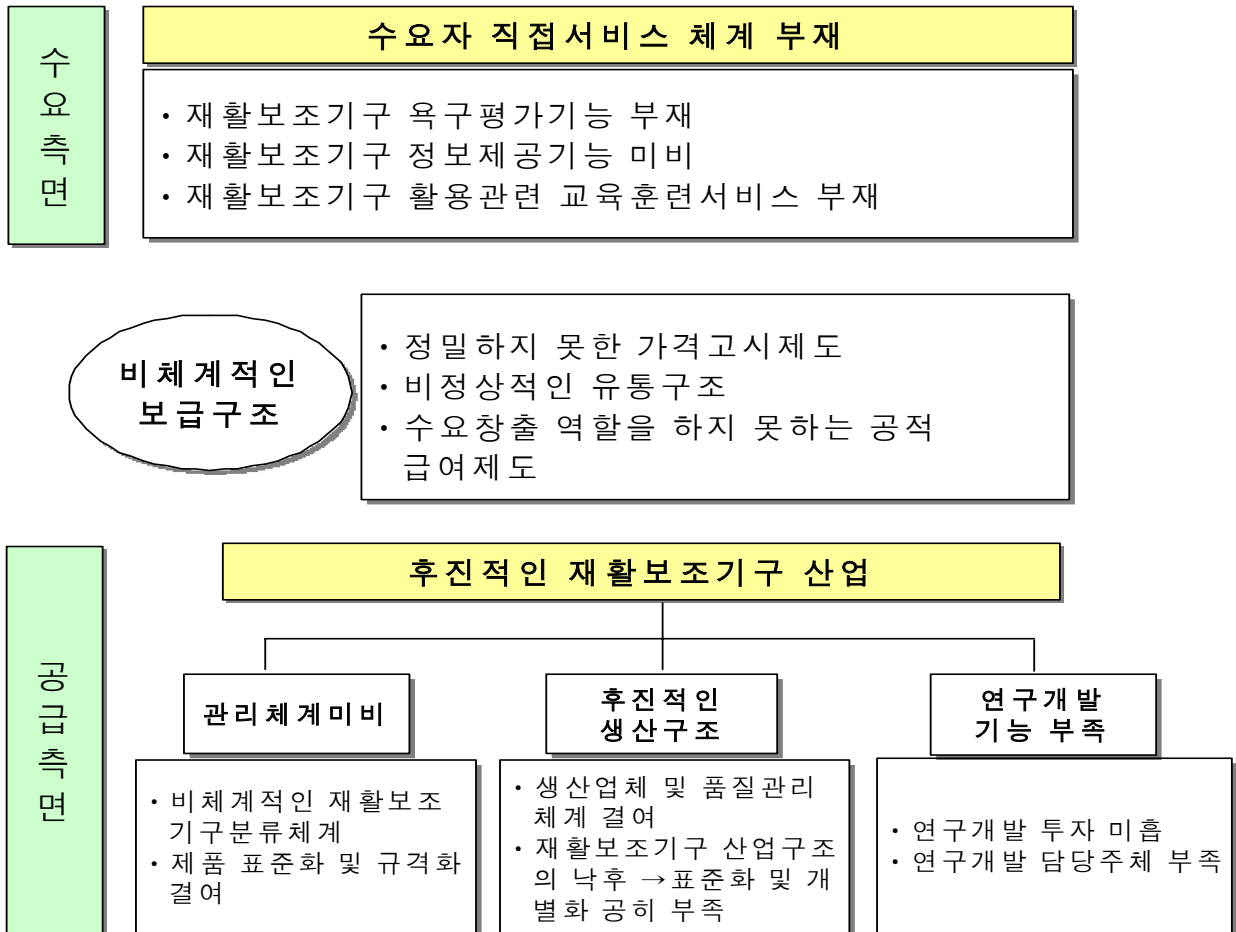
-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는 현재 ‘선구입-후보상’ 방식이나 이는 소득능력이 약한 장애인에게 크게 불리하며, 후보상을 위한 서류절차에 많은 노력이 소요
- 무료교부사업은 실적이 미미하며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존재
  - 무료교부사업은 ’05년 집행률은 78.3%에 불과
  - ※ ’05년 예산액 14억 9,800만원, 집행액 11억 8,600만원
  - 지역별 집행률 : 서울 96.1%, 경기 61.6%, 인천 69.4%, 경남 71.9% 등

□ 보조공학서비스 개념 및 체계의 미비

- 현재 우리나라는 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정보제공·사용훈련 등 수요자 직접서비스 등을 제공할 보조공학서비스 체계가 미확립 상태
- 수요자직접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, 자격관리체계도 미비
  - 재활보조기구 전문인력으로는 현재 의지·보조기 기사가 국가자격증으로 유일한 실정
  - 국가공인자격인 점역·교정사 및 수화통역사를 제외하면, 청능사나 보청기기사, 언어치료사, 직업평가사 등은 민간자격증
  - ※ 점역·교정사는 ’02년부터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제 시행. 수화통역사는 ’06년부터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제 시행 (’06년 6월 첫 시험)
  - ※ 전문인력 현황 (’05년 말) : 점역·교정사 143명, 수화통역사 693명, 의지·보조기 기사 약 600명, 청능사 약 80명, 보청기 기사 250명, 직업평가사 약 100명, 언어치료사 약 2,700명
- 수요자직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부재
  - 재활보조기구 전문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복지분야와 노동분야 모두 이 인력의 소속 및 책임, 역할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
  -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및 획득·활용방법에 관한 교육서비스 제공 부재

- 장애인들의 재활보조기구 인지도가 매우 낮고 재활보조기구 관련 정보도 매우 부족
- ※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재활보조기구 인지도는 약 29%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(『2004 보조공학서비스 욕구 및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』)

<그림 4-20> 현행 보조공학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



### ③ 추진계획 : 재활보조기구 개발·보급 확대 및 산업화

- 재활보조기구 분류의 체계화 및 품질관리체계 정비
  - 기본원칙 : 의료기기와 공산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구를 구분하여 품질관리체계 정비
  - 분류체계화와 품질관리체계 정비는 복지부 주관 하에 노동부, 산업자원부, 정보통신부가 협의하여 별도 연구용역 추진, 세부방안 마련
    - 현재 추진 중인 고령친화산업 진흥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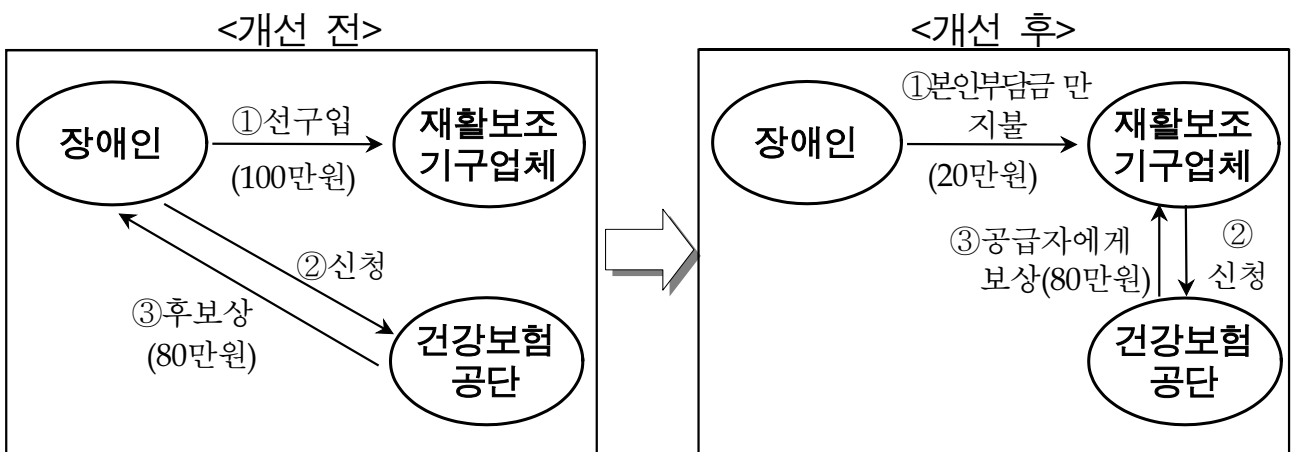
□ 재활보조 전문인력 확대 및 자격제도 정비

- 언어치료사, 청능사 등의 자격제도 정비(구체적 방안 연구 후 추진)
- 수화통역사 확대
  - ’15년까지 수화통역사를 선진국 수준(청각장애인 100명당 1인)까지 확대
  - ※ 현재 수화통역사는 693명으로 청각장애인이 17만명임(’05.12 등록장애인 기준)을 고려할 때, 약 1,000여명 추가 확보 필요 (추정장애인 기준 청각장애인은 22만 8천명)
  - 수화통역센터 확충 및 지방이양사업 평가시 평가기준으로 활용

□ 공적급여 확대 및 건강보험 급여절차 개선

- 기본원칙
  - 의료적 성격이 강한 품목은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생활용품 성격이 강한 품목은 저소득층 대상의 무료교부 확대
  - 급여확대순서 : 대상품목확대 → 단가현실화 → 내구연한조정
- 공적급여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은 일반회계와 건강보험 간 역할구분 조정에 관한 별도의 연구·검토를 거쳐 결정
- 건강보험의 급여절차 개선
  - 현행 ‘선구입-후보상’ 방식을 ‘공급자보상’ 방식으로 전환
  - 재활보조기구 생산업체의 건강보험공단 등록제 추진

<그림 4-21> 건강보험 급여절차 개선안(100만원의 재활보조기구 구매시)



□ 연구기능 강화

- 현재 설립 중인 국립재활원의 연구소에 재활보조기구 관련 연구기능 부여 및 강화

-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보조공학센터는 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업보조기구 연구기능으로 특화
-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
  - 기본방향 : 산업 측면에 중점을 둔 법률과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
    - 산업측면에 중점을 둔 법률은 고령친화산업법과 통합하여 제정 추진
  -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
    - 제1안 :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법률(한 법, 혹은 부처별)을 별도로 제정
    - 제2안 :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 보강

<표 4-15> 보조공학 관련 법률 제정의 대안별 장단점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안<br>(산업: 별도 법률,<br>서비스: 별도 법률) | - 재활보조기구산업 활성화에 유리                        | - 서비스 관련하여 별도 법률 제정시 부처소관 문제 발생 가능성 |
| 제2안<br>(산업: 별도 법률,<br>서비스: 법률 개정) | - 서비스 관련하여 기존 법률 개정시 부처소관 문제 미발생, 직업의 간편성 | - 서비스 전달체계의 단편성 증가 우려               |

-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추진하는 작업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속 추진
-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기능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
  - 재활보조기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추진
    - 장애인관련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·정비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
  - 재활보조기구산업의 고도화도 중장기적으로 추진
- 보조공학서비스(수요자직접서비스체계) 시범사업(’07~’09년, 3년간)
  - 시범사업은 시·군·구 장애인 사례관리지원체계 시범사업에 포함 추진



## 6)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

### ① 추진현황

-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
  -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결정 : ’04년 10월
    - ※ 이에 따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(’05.3), 국가인권위법 개정(’05.6)
  -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안 성안위원회 구성 운영(’05. 10), ’06년 중 법안 제출 계획
-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 주장
  -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(장추련) 결성(’03.4) : 70개 장애단체가 연대
    - 장추련 결성 후 국토순례 및 지역순회 토론회, 기자회견 등 수차례 개최
    - ’06년 4월 국회 앞 1인 시위 등 장차법 별도 입법을 위한 운동 지속
  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」 국회 접수(노회찬 의원 등 37인 발의, ’05. 9. 20).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

### ② 문제점

- 장애계는 인권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 및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·운영(국무총리 산하) 주장
  - 장애계는 노동차별이 내용의 70% 이상인 차별금지법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 어렵다고 주장
  - 장애계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수단으로는 장애유형별로 차별의 내용이 차이가 많아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미약하다고 주장
  - ※ 한편 장애계 일각에는 아직도 인권위 추진 차별금지법이 장차법 별도 입법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견지 (이는 차별금지법을 통합법으로 보는 시각에 근거한 견해)
- 핵심 쟁점
  -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vs. 장차법의 별도 입법
    - ※ 이는 차별금지법을 통합법으로 보는가, 기본법으로 보는가와도 관련된 쟁점
  -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vs.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기구 설치

- 차별사유로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
  - 인권위 : 일반적인 장애개념에 한정
  - 장애계 : 일반적인 장애개념 + 일시적인 장애까지 포괄
    - ※ 인권위 차별금지법의 장애개념도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보다는 광의의 개념
- 이 외에 차별유형 및 차별영역의 범위 등에서 차이
  - ※ 차별유형 : 인권위 - 직접차별, 간접차별, 괴롭힘의 3종  
장애계 - 직접차별, 간접차별,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, 차별 조장행위 등 4종
  - ※ 차별영역 : 인권위 - 고용, 재화등의 공급·이용, 교육·직업훈련, 법령·정책집행 등 4개 영역  
장애계 - 고용, 교육, 건축물, 이동·교통수단 등 14개 영역
- 권리구제방안 : 시정권고, 시정명령,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(2~5배) 등 유사
  - ※ 권리구제방안의 경우에는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이 장차법보다 일부에서는 보다 진보적
- 관련 부처 입장
  - 복지부 : 인권위 차별금지법으로 장차법 논란이 해결되기를 기대
  - 노동부 : 시정명령,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부정적

### ③ 추진계획

- 정부와 장애계 합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T/F 구성
  - ’07. 3월까지 장애계와 정부의 합의안 도출 추진

## 기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

### ① 추진현황

- ’94년부터 여성장애인 관련정책을 중앙과 지방에서 수립·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분적으로 정책서비스 전개
  - ’94년 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’에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조항(제8조) 포함
  -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(’97년)에 여성장애인은 특수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를 갖는 요보호계층으로 규정
    -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프로그램 개발·보급방안과 장애인 여성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 포함

-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본격적 접근은 ’98. 12월 장애인인권헌장 11장에 ‘여성장애인은 임신, 출산,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’고 명시한데서 시작
  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공포
- ’99. 1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9조 ②항에서 ‘여성장애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, 이를 근거를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 마련
-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제1차(’98~’02), 제2차 ‘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(’03~’07)’으로 중앙·지방 정부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 정책·사업을 포함
  - ※ 여성장애인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으로, 성인지력 향상, 건강관리, 여성장애인의 폭력,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 등 추진
- 장애인복지사업지침(’99년), 성폭력예방사업지침(’02년)에 여성장애인 관련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·여성관련 복지시설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도록 권장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등 지원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(’05.12)
-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‘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개정 (’06.4)

## ② 문제점

-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이중차별에 대한 관심 부족
  - 여성관련법 혹은 장애인관련 기본법에서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수렴하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정 미흡
    - ‘장애인복지법’, ‘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’, ‘특수교육진흥법’, ‘노인·장애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’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들이 있지만,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 조항이 없으며,
    - 여성발전기본법, 남녀고용평등법,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, 모자보건법 등에서도 여성장애인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정책 미흡

※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정신적,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 명시

-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욕구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
  -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없고, 이와 관련한 정책통계마저 부재
- 복지부·노동부·여가부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·출산·육아활동·가사노동·가족생활 등 여성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,
  -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지원정책은 미흡

### ③ 추진계획

#### □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강화 및 건강서비스 제공

- 안전한 임신·출산환경 조성
  - 여성장애인에 대한 모자보건서비스 강화(’07년)
    - 임신부 및 중증여성장애인을 모자보건사업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
    - 지체·뇌병변·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산전·산후 도우미지원 강화
  - 임신·출산관련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
    - 임신·출산관련 의료비 지원을 자연출산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
    - 자연분만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이 제왕절개시 의료수가 가산 적용
  - 여성장애인 임신·출산·산전후 건강관리담당 전담의료기관 지정 검토
    - 장애인재활병원, 국·공립병원 등을 전문병원으로 지정
- 중증여성장애인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입소 강화(’07년)
- 여성장애인의 가사 및 자녀학습지원을 위한 도우미제도 활성화(’07년)
- 보건소의 여성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및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매뉴얼과 의료진을 위한 가이드 배포(’07년)

#### □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

- 지역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의무화와 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(’07년)
-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장애인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고 여성장애인의 시각에 맞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(’07년)

- 여성장애인 인권침해·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와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장애인 인권교육 실시(’07년)
-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보호 강화
  - 피해자 보호시설(상담소, 생활시설 등)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,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기간 현실화(6개월 → 1년)
  - 수사·재판과정에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및 보호장치 마련
-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·고용지원 강화
  -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교육 지원 강화
    - 성년기 여성장애인에 대해 문해교육 등 기초교육과 사회교육 실시
      - ※ 복지부 : ’06년 2개시도(250백만원)→’07년 4개시도(400백만원)→’08년 16개시도(1,600백만원)
  - 여성장애인에 대한 균등한 고용기회 확립 및 고용촉진 강화
    - 국가·지자체의 의무고용제도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(’08년)
    - 의무고용제도 개편 시, 고용장려금 가산 비율 확대 등 검토
    -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
      - 여성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신청시 가점 부여(중증은 중복가점, ’07년)
      - 국가공인 자격·면허 취득관련 과정 수강에 대한 훈련수강료 지원 강화
      - 적합직종 개발 및 직업교육기관에 여성장애인 적합과정 개설·운영
-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
  - 여성장애인 리더그룹 DB 구축(’06년) 및 여성장애인 단체의 국내외 활동 지원
  -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에게 성인지 교육 실시 및 장애인 유관시설에 여성장애인 전담 컨설턴트 지정·운영(’06년)
  -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및 시설 등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 사이트 구축, 커뮤니티 개설 및 안내자료 발간·보급(’07년)
  - 국제 여성 전문 인턴 선정시 여성장애인에게 가점 부여(’07년)
-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·제도 정비
  - 여성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
    - 여성·장애인관련법에 여성장애인 기본권 명시를 위한 법 개정 추진(’07~’08년)

- 여성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정부통계자료 구축(’07년)
- 장애인정책의 성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지속 추진
-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‘여성장애인 정책협의회’ 구성·운영(’06년)
- 장애인관련 정부 위원회의 장애인 참여비율 중 일정비율을 여성장애인에게 할당(’07년)

### 3. 장애인정책 시스템 혁신

#### 1) 장애인등록 판정·등록체계 및 서비스전달체계 혁신

##### ① 추진현황

- 현행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
  - 서비스 진입경로 : 장애인등록제도 운용
  - 직접서비스
    - 현금지원은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을 통해 제공 (주로 자산조사 실시)
    - 현물지원은 민간복지기관 등을 통해 제공
  - 간접서비스 (각종 감면·할인, LPG 세금인상분 지원 등)
    - 별도의 전달체계 없이 장애등록을 통해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

##### ② 문제점

- 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미흡
  - 욕구평가체계 결여
    - 직접서비스의 경우 자산조사 등 경제적 능력 평가만 이루어지고, 간접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욕구평가를 할 수 없는 구조
    - 의학적 손상과 사회적 혜택의 수급자격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나, 현재는 의학적 손상에 기초한 장애등급이 각종 제도의 수급자격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

- 경제적 능력에 따른 욕구평가만 이루어짐으로써 의학적 손상에 의한 장애등급과 경제적 욕구가 결합되어 각종 직접지원의 수급자격이 결정됨으로써 장애 그 자체가 환경적 맥락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는 언제나 정책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 초래
- 현재 우리나라는 직업능력이나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장애인 욕구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 자체를 가지지 않은 상황
  - 욕구평가체계의 결여는 곧 욕구에 따른 자원배분체계의 결여로 이어짐
- 사례관리체계 부재
  - 장애인은 자원에 관한 정보가 없고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함
- ☞ 욕구와 자원을 연결하여 배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결여
- ☞ 욕구와 자원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따라서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공존하는 결과 초래
- 자원배분체계의 왜곡
  - 욕구평가 및 사례관리체계와 같은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미흡한 가운데 각종 감면·할인혜택을 무분별하게 도입
  - 도입 후 감면·할인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
    - 감면·할인은 제도의 작동 자체가 욕구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
    - 현재 감면·할인은 장애등록과 동시에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구조
  - 감면·할인의 급증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내실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제약
- ☞ 자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배분·전달·관리하는 시스템이 결여 → 자원량을 증대시켜도 복지체감도가 낮은 상황 지속
- 장애인관련 전문인력 자격체계 정립 미흡
  - 전문인력의 부족 및 공급불균형
    - 특수교사 중 직업교육전공교사는 180명(특수교사의 3.2%)에 불과
    - 직업평가사는 전국적으로 100여명에 불과 → 서비스 효과성에 한계
    - 수화통역사는 청각장애인(170천명) 100명 당 0.4명에 불과
  - 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·유지를 위한 자격관리 부재

- 현재 장애인관련 전문인력 양성은 민간교육기관에 일임
  - ※ 민간교육기관의 경우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인력양성을 연계할 수 없어 인력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
- 장애인관련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부재
  - 자격갱신과정이 전혀 없거나, 있더라도 보수교육으로 대체되는 상황
  - 전문성 유지를 위한 노력은 대부분 자격관리를 맡은 기관에 위임
  - ※ 미국의 경우 재활보조기구업체 종사인력도 장애인 전문인력으로 분류하여 엄격히 관리
- 전문인력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부재
  -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 호환가능한 인력 DB를 구축하여 장애인 분야 종사 전문인력의 현황 및 동향을 종합적으로 관리 필요
  - ※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직업훈련교사, 치료레크리에이션사 등은 자격증을 소지해도 장애인 외 타 분야 종사 가능

### ③ 추진계획

#### □ 장애판정의체계 개편 추진

- 장애판정을 전담하는 “장애판정의(Panel Doctor)”(가칭) 제도 도입
  - 장애판정의는 재활전문의를 중심으로 선정하며, 시·군·구 사례관리지원팀에 반드시 등록하여 관리
  - ※ 시각·청각·언어 등 특수한 장애영역의 판정의는 해당 전문의에 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장애판정의 자격 부여
- 현행 장애판정기준을 의학적 기준 및 직업적 기준,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전면 개편 추진
  - 사고, 질병, 임신·출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를 임시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임시주차증을 발급하는 제도 도입 추진
- 장애판정기준의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’07~’08년)
  - 연구용역의 1차년도에는 장애판정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병행

#### □ 장애인 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

- 장애인 사례관리지원체계는 시·군·구 및 노동부 산하에 각기 구축
  - 시·군·구 사례관리지원팀의 구성 : 총 7명, 사회복지사(4명), 직업능력평가사(1명), 심리평가 전공자(1명),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(1명)



- 노동부 산하의 “통합고용지원팀”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사에 설치
  - 구성 : 팀당 4명 (직업평가사 3명, 사회복지사 1명)
- 시·군·구 장애인 사례관리체계의 운영방안
  - 장애인등록에 관련 업무절차는 시·군·구 사례관리지원팀이 수행
    - 사례관리지원팀은 초기 상담(본인 및 가족)과 기초 평가(구조화된 평가 도구 활용) 및 서비스관련 정보 제공, 기관간 의뢰를 담당
  - 장애인이 사례관리지원팀의 의뢰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하거나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
    - 장애인을 의뢰받은 서비스기관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시·군·구의 사례관리지원팀에 통보
  - 통합고용지원팀은 서비스제공내용을 시·군·구 사례관리지원팀에 통보
- 지역별 장애인 관련자원 연계체계 구축
  - 지역별 자원연계체계의 총괄 조정은 사례관리지원팀이 담당
    - 장애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부처 산하기관들 모두 포함하여 구축
  - 사례관리지원팀은 각 기관들에 대해 자원DB를 구축하고 이는 관할지역 내 등록장애인에 관한 욕구DB와 연결하여 관리
- 사례관리 체계는 시범사업(’07.7~’09)을 거쳐 추진
  - 사례관리지원체계와 자원연계체계 구축방안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정
    - 시범사업지역 : 전국 10개 지역(자원량, 장애인구 등 고려)
      - 시범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생활지원체계 혁신방안의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진행하기 위해 ’07년 7월 1일부터 개시
    - 시범사업모형은 ’06년과 ’07년 전반기 중 복지부·노동부·교육부의 공동 연구로 개발하되 주민생활지원체계 혁신방안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설정
    - 시범사업기간 중 장애인관련 전문인력의 중장기적 소요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’07년)
  - 자원DB 및 욕구DB는 시범사업 2차년도에 호환성이 보장되도록 구축
    - DB구축이 완료 후 시범사업지역의 장애인관련 자원배분상황을 분석하는 연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, 각종 감면·할인 혜택의 배분실태 등 심층 분석

## V. 참여정부내 역할

### 1. 장애인의 기본적 삶 보장

| 범주   | 현행   | 기존계획   | 종합대책   | 참여정부내 역할  |
|------|--|--|--|---|
| 소득보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장애수당</li> <li>- 수급자에게 중증 월 7만 경증 월 2만</li> <li>* 장애아동 부양수당</li> <li>- 수급자 중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월 7만원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장애수당을 차상위층으로 대상 확대</li> <li>* 국민연금 내 장애인 급 지원대상자 확대 추진 (국회 계류중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장애수당</li> <li>- 재가 중증장애인 월 14만원으로 인상</li> <li>- 경증 장애인 월 3만(단계적 인상)</li> <li>* 장애아동 부양수당 폐지 기 초차상위 장애아동에게 지급</li> <li>- 중증 월 15만 경증 월 10만</li> <li>* LPG 지원제도 개편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장애수당 현실화</li> <li>* LPG 지원제도 개선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료보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의료비지원</li> <li>- 의료급여 2종 수급권 장애인, 본인부담금 일부보전</li> <li>* 장애인 보장구</li> <li>- 74개 보장구 건강급여 지급 및 내구연한 연장</li> <li>*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의 특수 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설치</li> <li>* 6개권역 재활병원 단계적 건립(’04-’09)</li> <li>* 시군구 구강보건센터 확충 (’06년 5개소, ’09년까지 95개소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국립재활원</li> <li>- 재활 병상 확충 (200개 → 300개)</li> <li>- 재활의료서비스지원센터 설치</li> <li>* 지역사회재활사업보건의료확충 (45→200개소)</li> <li>* 수화통역사 양성확대</li> <li>*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도입</li> </ul>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국립재활원 재활의료서비스지원센터 설치</li> <li>* 가산수가 제 도입</li> <li>* 수화통역사 70인 양성</li> </ul>       |
| 교육보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</li> <li>- 중고생 자비를 둔 가구규모별 일정 소득액 이하장애인 가구</li> <li>- 입학금, 수업료 교제비 등</li> <li>* 특수교육보조인력 확대(’07년까지 10,250명)</li> <li>*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(60개소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특수학급 증설 및 통합교육 제공 확대</li> <li>*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 3%이상 확보</li> <li>* 국립특수교육원 기능 강화 및 운영 효율화</li> </ul>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3세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기반구축(특수교육진흥법 개편)</li> <li>* 통합학급 지원교사 배치</li> <li>* ’10년까지 특수교육 수혜율 100% 달성</li> <li>*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확충 (’10년까지 1,240명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특수교육진흥법개편</li> <li>*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완전 배치</li> <li>* 특수교육보조원 5,000명 완전배치</li> </ul> |
| 주거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공부문 공급 주택 내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</li> <li>* 농어촌 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등록장애인 주택개조사업(1,000가구)</li> <li>* 매입 또는 전세임대의 일정 물량 그룹홈으로 공급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원(1,000가구)</li> <li>* 장애인 그룹홈 공급물량을 자치체가 탄력적으로 결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 확대</li> <li>- 농어촌 1,000가구 → 전국 3500가구</li> <li>- 장애인 주택개조 매뉴얼 제정</li> <li>* 그룹홈 확대 지속</li> <li>- 다가구 매입 임대 물량의 3% 확보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국 재가 장애인 주거실태 조사 및 주택개조 지원</li> <li>* 그룹홈 220호 신규설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|

| 범주   | 현행  | 기존계획   | 종합대책   | 참여정부내 역할   |
|------|---|--|--|--|
| 고용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의무고용제도</li> <li>- 의무고용률 2%(50인 이상 사업장)</li> <li>*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</li> <li>* 보호고용</li> <li>- 직업재활시설 운영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노동부 『고용선진화 계획』에 장애인 포함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의무고용제도</li> <li>- 현행 의무고용대상(전체장애인) → 직업적 장애인 대상으로 전환(10년까지)</li> <li>* 근로를 위한 비우처 도입</li> <li>* 시각장애인 간선버스터 간접</li> <li>* 직업재활시설 재분류</li> <li>* 장애유형별 고용증진 방안 마련</li> <li>* 의무고용 및 직업재활사업 관련 재정역할구분 원칙 재정립 - 기금과 일반회계 관련 사회보험의 역할 명확화</li> <li>* 의무고용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</li> <li>* 보호고용시설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직업적 장애개념 판별기준 연구</li> <li>* 직업재활시설 전면재평가 및 재분류</li> <li>* 근로를 위한 비우처 도입 방안 마련</li> <li>* 통합평자인턴 사업사업사례관리자 인턴 사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</li> <li>* 보호고용 전국네트워크 체제구축 준비사업 착수</li> <li>* 직업재활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자격성비방안연구</li> </ul> |

## 2.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

| 범주     | 현행   | 기존계획  | 종합대책   | 참여정부내 역할  |
|--------|--|---|--|---|
| 이동권보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장애인 이동권 보장</li> <li>- 저상버스 도입(05년말 22대 도입)</li> <li>- 도시철도1역사1엘리베이터설치</li> <li>- 장애인택시 등의 특별 교통수단 도입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『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』 시행</li> <li>- 이동편의시설 설치·이용현황 파악, 연차별 개선계획 도출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건축물과 택지개발 사업지 대상 '장애물 없는 도시' 인증제도 도입</li> <li>* 건축시에 대한 「편의증진법」 교육</li> <li>* 저상버스 확대</li> <li>- 전국 시버스의 50%(13년까지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건축물 이동편의 증진</li> <li>- 준공검사이 이동편의시설 체크리스트 마련</li> <li>- 건축의 「편의증진법」 교육</li> <li>* 이동편의 평가단 구성 및 사업사업</li> <li>* 장애인회지역 사업사업</li> </ul> |
| 자막방송   |  |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자막방송을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·시행</li> <li>* 방송수신기 보급 지속적 확대</li> <li>*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비한 제도적 정비 추진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지상3사 자막방송 추진</li> <li>* '06년 가을개편시 자막방송 편성 확대·시행</li> <li>* '07년 상반기 중 지상파 디지털 TV 자막방송 기술표준 개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보접근보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정보접근권</li> <li>- 장애유형별 웹접근 기술개발 지원</li> <li>-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 대책 보고(06년 5월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정보통신기기(휴대폰,ATM) 접근성 향상 기술개발</li> <li>* 정보접근 보장하는 의사소통 환경개선</li> <li>-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지원</li> <li>- PC,인터넷 보급 확대</li> <li>- 행정기관의 웹접근성 준수 확보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연구지원(06~07)</li> <li>* PC, 인터넷 보급 및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확대(06~07)</li> <li>* 법률 정비를 통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제도화 및 정책관련 연구용역(07)</li> </ul>  |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-|
| <p><b>자립생활지원</b></p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06년부터 8개사도에 10개소 자립생활서비스원 시범사업 실시</li> <li>* 전국 26개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실시중</li> <li>* 저소득층 기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도우미사업(복권기금) 실시</li> </ul>   | <p>* 현행대로 추진</p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</li> <li>- 대상:재가 최중증 장애인 (단계별 확대 예정)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활동보조인제도 시책 시범사업 추진</li> <li>* 관계자 교육 및 홍보 및 시행</li> </ul>  |
| <p><b>재활보조기구</b></p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적재활보조기구 급여실시</li> <li>-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, 보훈 정보통신부 등에서 재활보조기구 급여</li> <li>*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</li> <li>- 의지·보조기 제조업소 신고제 및 의지·보조기 가사의 무배치제도</li> <li>*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</li> <li>- 재활공학연구소(노동부), 보조공학센터(장애인고용촉진공단)등</li> </ul> | <p>* 현행대로 추진</p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재활보조 전문인력 확대 및 자격제도 정비</li> <li>- 언어치료사, 청능사 국가공인자격화, 수화통역사 확대 ('15년까지 1000여명)</li> <li>* 적극급여 확대 및 건강보험 급여절차개선</li> <li>- 선구입후보상→공급자보상</li> <li>*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 법률 제정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체계 정비 연구 조사</li> <li>* 작업보조기기 지원</li> <li>* 건강보험 급여절차 개선 시행 및 업체 등록제 실시</li> <li>* 보조공학서비스 시범사업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b>장애인차별금지</b>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중</li> <li>-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에 장애인을 포함함</li> </ul>   | <p>*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계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의 대립</p>   | <p>*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여부 검토</p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정부와 장애계 합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T/F 구성</li> <li>- '07.3월까지 장애계와 정부의 합의한 도출 추진</li> </ul>   |
| <p><b>여성장애인</b></p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성폭법에 장애인 준강간 조항 포함</li> <li>* 여성장애인 특수보건의료서비스 대상으로 규정</li> <li>*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의무 강화를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</li> <li>* 가정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마련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여성장애인 성인지력 향상</li> <li>- 성인지력 교육 및 모성보호 교육 강화</li> <li>- 편의시설 설치시 여성장애인 특성 고려</li> <li>*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강화</li> <li>- 국공립의료기관내 여성장애인 특별진료팀 구성</li> <li>- 산전산후 가정봉사원 파견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모성보호 강화 및 건강서비스</li> <li>- 임신출산관련 의료수가 가산적용</li> <li>* 가정성폭력피해자보호 강화</li> <li>*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</li> <li>- 용자 신청시 가점 부여</li> <li>* 여성장애인 기본권 명시를 위한법 개정 및 통폐료 구축</li> </ul>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진료수술 등 의료수가가산적용</li> <li>*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및 입소기간 현실화</li> <li>* 여성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</li> <li>* 장애인관련 정부위원회 여성장애인할체 도입</li> </ul> |

### 3. 장애인 정책 시스템 혁신

| 범주                    | 현행   | 기존계획  | 종합대책  | 참여정부내 역할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---|
| <p><b>서비스전달체계</b>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서비스 진입 경로로 장애인 등록제도 운용</li> <li>* 현금지원은 사·군구 및 읍면·동을 통해 제공</li> <li>* 현물지원은 민간 복지기관을 통해 제공</li> <li>* 서비스는 별도의 전달체계없이 등록을 통해 자동 수혜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행정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추진</li> <li>- '06년 7월 53개 지역에 대해 시범 실시이후 '07년 7월 전면 실시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장애인사례관리체계 구축</li> <li>- 시군구 사례관리지원팀</li> <li>- 공단 통합고용지원팀</li> <li>- 지역사회지원 DB 구축</li> <li>* 장애인등록제도개편</li> <li>- 장애인판정의(panel doctor) 제도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례관리지원팀 시범사업 (보조공학서비스도 고려)</li> <li>* 장애인평가기준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</li> <li>* 지원 DB 및 욕구 DB 구축 기본계획 확정</li> </ul> |

## VI. 추진체계 및 부처별 세부 역할 분담

| 조치사항  | 주관부처              | 협력기관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전반적인 추진상황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조실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<b>1. 장애인의 기본적 삶 보장</b>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<b>1-1. 장애인 소득보장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① 장애수당, 장애아동 부양수당 제도 개편 및 인상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 | 재경부, 예산처 |
| ② 자동차세 면세 일몰기간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교부               | 재경부, 예산처 |
| ③ 철도 요금 등 각종 요금 감면제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| 건교부               | 재경부, 예산처 |
| ④ LPG 지원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<br>재경부<br>산자부 |          |
| <b>1-2. 의료 접근성 제고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① 국립재활원 기능 개편 및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② 재활의료수가제 적용항목 개발 및 수가 상향 조정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③ 권역별 재활병원 및 거점보건소 연계체계 확립 및 지역사회거점재활사업보건소 확대 | 복지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④ 시군구 구강보건센터 지속적 확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⑤ 장애인 진료 의료기관 지정 및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⑥ 병의원으로서의 이동비용 보전 방안 모색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 | 건교부      |
| <b>1-3. 장애인교육 내실화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① 3세 미만 장애아동 무상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| 복지부, 재경부 |
| ②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장애개념 세분화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|
| ③ 특수학급 증설 및 편의시설 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| 건교부      |
| ④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⑤ 대학내 장애인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⑥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·사범대학으로 확대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⑦ 교대·사대의 특수교육 관련 강좌 개설 의무화 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⑧ 장애 성인 평생학습을 위한 체계적 관리체제 구축 및 근거마련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⑨ 취업지도, 직업 교육 관련 전담 교사제 운영 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|
| ⑩ 산업체 파견학급 설치 및 현장 적응 중심 직업교육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|
| ⑪ 국립특수교육원 기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<b>1-4. 장애인 주거 지원 확대</b>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① 그룹홈 확대 및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② 장애인 가구 주택개조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③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교부               |          |

|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부처 | 협력기관               |
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b>1-5.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 혁신</b>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① 직업적 장애개념 판별 기준 연구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② 직업재활시설 재평가 및 분류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③ 근로를 위한 바우처 도입 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④ 통합고용지원팀 시범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⑤ 보호고용 전국네트워크 체제 구축 준비작업               | 노동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⑥ 직업재활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자격정비방안 연구            | 노동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⑦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과 일반회계, 사회보험 역할 재정립         | 노동부  | 복지부, 예산처           |
| ⑧ 공단 지사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<b>2.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</b>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<b>2-1. 장애인 이동권 증진</b>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① 신도시·신규시설에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제도화            | 건교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② 준공검사시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점검위한 검사목록 마련       | 건교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③ 건축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 「편의증진법」 관련 규정 교육 강화  | 건교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④ 저상버스 도입 확대 지원 및 표준형 저상버스 개발          | 건교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⑤ 권역별 특별운송서비스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| 건교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⑥ 지자체 교통복지 수준 평가 교통복지지표 개발             | 건교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⑦ 지자체 배리어프리(장애친화)지역 시범사업 실시와 표준화 작업    | 건교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⑧ 이동편의시설 유지 관리 모니터링 강화                 | 건교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<b>2-2.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</b>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① 재가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               | 복지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<b>2-3. 자막방송 확대</b>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① 자막 방송을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 시행               | 방송위  |                    |
| ② 방송 수신기 보급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통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③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비한 제도적 정비 추진              | 방송위  | 정통부                |
| <b>2-4.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</b>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① 정보통신기기 생산과정에 장애인 접근권 반영 기술개발         | 정통부  | 복지부, 노동부, 산자부      |
| ② 법률정비를 통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제도화 및 정책 관련 연구 용역 | 정통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③ PC, 인터넷 보급 및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확대           | 정통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<b>2-5.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확대 및 산업화 추진</b>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①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화 및 품질관리 체계 정비            | 복지부  | 산자부, 식약청, 노동부, 정통부 |
| ② 공적급여 확대 및 건강보험 급여절차 개선               | 복지부  |                    |
| ③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               | 복지부  | 산자부, 노동부           |
| ④ 보조공학 서비스(수요자직접서비스체계) 시범사업            | 복지부  |                    |

| 조치사항  | 주관부처       | 협력기관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<b>2-6.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① 여성장애인 모자보건사업 강화,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와 매뉴얼 및 가이드북 배포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② 임신·출산관련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③ 여성장애인 임신·출산·산전후 건강관리 담당 전담의료기관 지정 검토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④ 중증여성장애인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가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⑤ 여성장애인의 가사 및 자녀학습지원을 위한 도우미제도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| 여가부              |
| ⑥ 지역사회복지관, 여성폭력시설의 여성장애인 관련 폭력예방 교육 의무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 | 여가부<br>복지부 |                  |
| ⑦ 여성장애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인지 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가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⑧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      | 여가부              |
| ⑨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및 입소기간 현실화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가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⑩ 여성장애인 문해교육 등 기초교육과 사회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⑪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및 고용장려금 가산비율 확대 등 검토     | 노동부        | 여가부              |
| ⑫ 여성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신청시 가점 부여, 훈련 수강료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| 여가부              |
| ⑬ 여성장애인 리더그룹 DB 구축 및 국내외 활동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가부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|
| ⑭ 국제전문 여성인턴 선정시 여성 장애인에게 가점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가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⑮ 여성·장애인관련 법에 여성장애인 기본권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| 여가부, 교육부,<br>법무부 |
| ⑯ 여성장애인 관련 정부통계 자료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| 여가부              |
| ⑰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여성장애인정책협의회 구성·운영              | 여가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⑱ 장애인 관련 정부 위원회의 장애인 참여비율 중 일정비율을 여성 장애인에게 할당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| 여가부              |
| <b>2-7. 장애인 차별금지법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연구 T/F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조실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<b>3. 장애인 정책 추진 시스템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<b>3-1.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① 시·군·구 단위 장애인사례관리팀 구성 시범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② 노동부 산하 통합고용지원팀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동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③ 장애판정의 제도 도입   | 복지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④ 장애인 관련 자원연계체계 및 DB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| 노동부              |
| ⑤ 장애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정비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|                  |